

2011

부패 · 공익침해 방지 심의 · 의결례집

제10집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 · 부패방지 · 행정심판

발 간 사



“清廉은 牧民官의 本務요 모든 善의 根源이요 德의 바탕이니, 清廉하지 않고서는 능히 牧民官이 될 수 없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공직자들이 청렴하면 나라가 제대로 된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있어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9위의 수출강국이 되었으며, 세계 3대 스포츠축제인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대회를 유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이어 올 해에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명실공히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청렴수준에 있어서는 갈 길이 무척이나 먼 게 현실입니다.

2011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으로 전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였으며,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인식도 조사에서도 일반국민의 65.4%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부패문제는 연고·온정주의와 같은 부패친화적인 문화와 이에 따른 알선·청탁관행, 그리고 사회전반에 만연한 불신이 그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금년 한 해를 우리사회, 특히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알선·청탁관행을 청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청탁관행 근절과 부패문화 척결을 위해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금년에 제정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레집」에 수록된 사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충실한 현장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와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것으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지난해 9월 30일 도입된 공익침해 신고사건의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등의 사례가 핵심 위주로 풍부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의·의결레집이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영역에서도 반부패·청렴의 생활화에 유용한 지침서로 활용되어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2. 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일러두기

「2011 부패·공익침해 방지 심의·의결례집」은 공직자 및 공직유관 단체의 부패 및 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사례를 총망라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수록함으로써 공직자들의 반부패 업무활용에 도움을 주고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근절하여 깨끗한 사회,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간한 자료집입니다.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상정순서에 따라 수록하였으며 의결사항은 부패·공익침해 신고사건, 행동강령 위반사건,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금 지급 등 안건을 분야별로 요약하여 수록하였고, 보고사항은 위원회 내부업무 관련 사항 및 의결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사안으로 목차만 수록 하였습니다.

본 심의·의결례집의 신고사건 등의 자료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에 대한 신고자 진술, 참고인 진술, 증거자료 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이며, 신고자의 보호와 피신고자에 대한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인명과 기관명을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본 책자에 수록된 사례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기관의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 본 사례를 임의 판단하여 특정인이나 기관을 비방하거나, 폄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Contents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부패 신고사건

■ 2011년 신고사건

01. TV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의혹 등	11
02.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12
03. 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3
04. 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 편취 의혹	14
05.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15
0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	16
07.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17
08.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	18
09. 쌀겨농법 재료 구매 및 벼수매 의혹	19
10.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	20
11.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21
12. 교육공무원 등의 창조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22
13.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등 의혹	23
14.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24
15.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25
16. 영어체험마을사업 관련 예산손실 특혜 의혹	26
17. ○○시 복공판 구매 관련 비리 의혹	27
18.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28
19.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	29
20. ○○전차 엔진개발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30
21.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31
22.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32
23.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33
24.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34
25.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	35
26.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 관련 비리 의혹	36
27.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편취 의혹 등	37
28. 도로공사비 등 과다 청구 의혹	38

29. ○○정보화협회 ○○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39
30. ○○시 학교보안관 사업 입찰 관련 비리 의혹	40
31. ○○여성인턴제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	41
32.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	42
33. 음식박람회 행사 등 국고 지원금 편취 의혹	43
34. 실업자 우선선정 직종훈련 훈련비 편취 의혹	44
35.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45
36.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등 의혹	46
37.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47
38. ○○중앙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	48
39. 하수관거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49
40.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50
41.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	51
42. 정부지원 바이오광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 의혹	52
43. 군수 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의혹	53
44.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 의혹	54
45.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55
46. 지방경찰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 낭비 의혹 등	56
47. 지방○○청 공무원의 허위 출장 등 공금 횡령 의혹	57
48. 지역연고산업 육성 사업비 횡령 의혹	58
49.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 등	59
50.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횡령 의혹	60
51. ○○공단 클린사업 지원금 편취 의혹	61
52. 기부채납 토지 등기미필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의혹	62
53.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관련 용역비 부당집행 등 의혹	63
54.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등 의혹	64
55.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65
56. 구청 공무원의 불법예식장 운영 관련 묵인 의혹 등	66
57.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	67
58.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68
59.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	69
60. ○○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 의혹	70
61. ○○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	71

62.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72
63. 국립○○원장의 간접비 등 부당집행 의혹	73
64. ○○중앙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	74
65. 모타가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 의혹	75
66. ○○진흥회 직원의 견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76
67.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등 의혹	77
68.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78
69. ○○시티 관광지원화 사업보조금 횡령 의혹 등	79
70.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	80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1. 국제지원사업물품조달 관련 비리 의혹	83
2.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목인 의혹	84
3. 신축건물 허위 사용승인 비리	85

제2절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신고자 보호

01. 「○○ 연구원」 신분보장조치 요구 관련 원상회복조치 요구	91
-------------------------------------	----

■ 신고자 보상금

01.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5
02.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6
03.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7
04.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8
05.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99
06. 「차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수수 및 횡령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0
07. 「군수의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1
08.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편취」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02
09.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3
10. 「상수도급수관 개량공사비 편취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4
11. 「○○업 면세유품 부정수급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5
12. 「○○포 납품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6

13.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107
14.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이의신청)	108

■ 신고자 포상금

01. 「공사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1
02. 「농지 매입자금 사기대출 등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2
03.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변호사비 지원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3
04. 「공공기관 실내건축 공사 입찰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4

제3절 공익 신고사건

01.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117
02.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	118
03.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의혹	119
04.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의혹	120
05.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121

제4절 공익 신고자 보호

01.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125
---------------------------	-----

제5절 기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01.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129
------------------------------------	-----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130
---	-----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131
-------------------------------------	-----

■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01.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132
02.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133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0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134
02.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135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01.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136
-------------------------	-----

■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01.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137
-----------------------------	-----

제2장 보고 및 의결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143
--------------	-----

부 록

■ 법령·예규

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51
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4
03. 공무원 행동강령	198
04. 공익신고자 보호법	206
05.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218
06.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232
07.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241
0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260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274
-----------------	-----

■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75
-----------------	-----

제1장 의결사항

제1절 부패 신고사건

- 2011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절 부패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 신고자 보호
- 신고 보상금
- 신고 포상금

제3절 공익사건 신고

- 2011 신고사건

제4절 공익 신고자보호

- 신고자 보호

제5절 기 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지침 제정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제1절 부패 신고사건

- 2011년 신고사건
-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11-5호

TV 프로그램 제작비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1. 1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등은 2006년경부터 매년 ○○부 ○○진흥개발기금과 ○○위원회에서 방송발전기금 등 300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연예정보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면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작가 등의 인건비를 지급해주는 것처럼 속여 제작비 수억 원 상당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이 2006년부터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참여한 것으로 속여 프로그램 제작비를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제도개선 등을 위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 대검찰청 및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이 프로그램 제작비 3억 1,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되어 2명 불구속 기소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관련 PD 등 8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 징계처분
※ 통보일자 : 2011. 11. 2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6호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병원 구내식당을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고도 마치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으로부터 입원환자 식사가산금(요양급여비용) 수 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7. 2. ~ 2010. 12.까지 구내식당을 직영한 것처럼 속여 ○○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억 4,7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억 8,6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 취혐의가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11.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7호

**장애인 협회의 사회단체보조금 편취 및
관련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물품 구입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 등이 불법으로 재활용 업체와 옷수거함 운영 계약 및 회계부정 등의 문제점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향응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A는 4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약 4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담당공무원은 불법행위 등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현금 200만 원과 수 회에 걸쳐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A가 장애인협회 후원금 약 5,000만 원 상당을 횡령사실이 확인되어 불구속 기소 송치(2011. 5. 26. 현재 2,70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1. 5.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9호

장애인 수당 등 복지수당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 담당공무원은 매월 장애인 수당 등을 지급 받는 A가 사망하자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매달 송금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통장 사본과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A 명의의 장애인 수당 등을 다른 사람명의의 통장으로 매월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약 29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무혐의
※ 통보일자 : 2011. 6. 1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0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관련 연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2.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신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산업 육성’ 연구용역(연구비 2억 7,000만 원)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피신고자가 설립한 (주)○○에너지에 위탁 연구용역을 준 것처럼 하여 위탁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용역수행 참여 연구원 진술 및 ○○기술연구원 위탁연구비 지급확인서, 용역수행 참여인력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2008. 2월경 설립한 (주)○○에너지에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주었으나, 연구원 대부분이 실제 연구한 사실이 없는 등 총괄 책임연구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꾸며 연구비를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1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의 뇌물수수 의혹
------------	------------------------------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1.경부터 2010. 4월경 ○○시 환경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십 여 차례에 걸쳐 수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통장사본 등 제출한 증거 자료와 관련기관의 공사발주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공사를 수주 해주는 등의 대가로 2,000만 원 ~ 4억 8,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조사 결과, ○○시 환경사업소장 4억 8,000천만 원, ○○경찰서 수사과장 6,3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시장 비서실장 2,000만 원 수수로 약식기소, 뇌물 공여 건축업자 1명 구속, 건축업자 4명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11. 7. 4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2호

보육시설 원장의 보육교사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퇴사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자를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구청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광역시 ○구청에서 제출한 종사자 임면보고서, 인건비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보육교사가 퇴사하였음에도 재직 중인 것처럼 하여 3,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조사 결과, 피신고자는 퇴사한 보육교사 명의를 이용하여 약 4,02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편취하고, 보육교사들은 이를 도와준 대가로 약 91만 원 ~ 215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피신고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1. 5. 4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3호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남도 ○○군에서 지원하는 가공유통센터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및 자부담금 등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수 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서류 및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9억 2,700만원 상당의 기계 장비를 구매하면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등 납품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고 약 2억 5,290만원을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으로 약 2억 1,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기소, 허위 견적서를 작성해 주고 사기 행위를 방조한 ○○기계 대표 불구속 기소
 - ※ 통보일자 : 2011. 8. 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5호

쌀겨농법 재료 구매 및 벼수매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친환경농법 쌀겨농법에 사용하는 ‘쌀겨 펠렛’ 을 구매하면서 구입업체가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쌀겨 펠렛이 쓸모없게 되었음에도 계약보증금 귀속이나 해지 등을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여 지자체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서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쌀겨공급업체가 기한 내 쌀겨 펠렛을 납품 하지 못해 살포 적기가 지나 쓸모없게 되었음에도 계약 보증금을 귀속하거나 계약해지 하지 않고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자체 예산을 손실케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수사 결과, 피신고자들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1. 6. 16
- ○○남도 감사 결과, 보조금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등 7명 훈계 조치
※ 통보일자 : 2011. 8.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6호	산학협력사업 관련 정부출연금 편취 및 부당 집행 의혹
1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등으로부터 정부출연금 약 50억 5,125만 원을 지원받아 ‘산학협력 애로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등 7건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 천만 원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A부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 2명을 참여한 것처럼 약780만 원을 편취하고, B부로부터 3억 6,100만 원을 지원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약 1,20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각종 경조사 및 선물 구입비를 과다하게 지출(약 3,381만 원) 한 것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관련 교수 1명 횡령 및 배임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및 소속 대학 통보

※ 통보일자 : 2011. 8. 23

- 교육과학기술부 조사결과, 연구비 1,277만원 환수조치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연구비 674만원 환수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7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2분과위원회(2011. 3.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9.경부터 2010. 12.경 부천소사 - 안산원시구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평가위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기술부문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위원 선정 기준 및 평가지침을 위반하여 (주)○○건설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부 내부분건과 ○○○에서 제출받은 자료, 감사원 감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국책 사업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평가점수 등을 조작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 통보일자 : 2011. 7. 1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8호

교육공무원 등의 창호공사 관련 뇌물수수 등 의혹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대 시설과장 외 28명은 2009. 5.경부터 2010. 11.까지 창호공사 업자 (주)○○대표로부터 공사발주 청탁 및 공사수주 대가 등으로 수 백만 원에 서 수 천만 원의 뇌물을 각각 수수한 의혹과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패 의혹이 모두 확인 되어 신속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34명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11. 8.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9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등 의혹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년 ○○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기술혁신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하면서, 지급 받은 정부출연금을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에 부당집행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기술연구원의 정부출연금 집행내역, 피신고자의 개인계좌 입출금 내역, 신고자,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정부출연금 5억 6,200만 원 중 약 1억 1,500만 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1. 5. 27
- 지식경제부 조사결과, 연구책임자 1명에 대해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1. 7. 2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20호

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 횡령 의혹

분과위원회(2011. 4.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8년 ~ 2012년까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 사업비를 동 사업과 관계없는 협력업체 등에 송금한 후, 피신고자 회사임원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약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관련 기관 정부출연금 입출금 내역, 신고자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정부출연금 3억 8,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고 1차년 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고, 2차년도 사업비 4억 5,000만 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반납하여야 하나 반납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19회에 걸쳐 7억 6,646만원을 횡령한 사실 확인,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2. 1.1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26호

무기 납품 관련 비리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4. 1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6. ~ 2010.경 사이에 ○○청에서 추진한 유도무기를 구매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려 약 1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특정업체의 공탄체를 구매하기 위해 사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주고 한-미간 직접구매(FMS)방식을 고의로 배제시켜 수 백억 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유도무기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고, 구매방법 결정과정에 정부 직접구매방식(FMS)을 배제시키고 무기중계상을 거쳐 구매토록 하여 국방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에 대하여 일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국방부로 이첩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28호	영어체험마을사업 관련 예산손실 특혜 의혹
------------	-----------------------------------

1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2008. 7. ~ 2009. 5. 25.까지 90억 원의 사업비로 영어체험 마을 조성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업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업 관련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및 특혜의혹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이 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또 다른 지자체 영어체험마을에 나타나고 있어 영어체험마을 사업장 선정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29호

○○시 복공판 구매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특정업체가 고가에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뇌물수수 등 대가를 받고 수 억 원의 예산을 손실케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지자체 공무원이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서만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사용할 것을 설계서에 명시토록 시공 업체에 권고함으로써 위 업체에 독점 납품의 특혜를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조사 결과, 1명 기소의견 송치, 관련 공무원 2명 ○○시 통보
※ 통보일자 : 2011. 8. 4
- ○○시 감사 결과, 2명 중징계, 230만 원 징계부가금 부과
※ 통보일자 : 2011. 8. 3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31호

민간병원장의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4.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영양사 2명을 채용한 후, 그 중 영양사 1명에게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음에도 영양사 2명이 상근으로 근무한 것처럼 하여 공단에 영양사 식사가산금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근로자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영양사 2명을 채용하여 그 중 1명이 총무과에서 지출 업무를 담당하여 상근 영양사 식사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상근한 것처럼 속여 공단에 4,34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34호

아파트 공사비 편취 및 감독관 뇌물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11. 5. 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A는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편취하였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가 공사비를 과다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뇌물 등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지조사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보다 토사 운반거리가 약 1.5km정도 단축되었음에도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청구하여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설계변경 등의 대가로 뇌물 수수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검찰 수사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11. 10. 7.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36호

○○전차 엔진개발 정부지원금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 ~ 2010.경에 ○○○○연구소로부터 378억 원을 지원받아 ○○전차 엔진을 개발하면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엔진에 사용된 부품이나 연료비, 연구원 인건비를 ○○엔진 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여 29억 원을 편취하고, ○○청과 양산계약 하면서 원가를 부풀려 42억 원을 편취하는 등 약 7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전차용 엔진을 개발하면서 자체 판매용 엔진이나 신규개발용 엔진에 사용된 부품 등 30억 원 상당을 ○○전차용 엔진개발에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개발된 전차엔진 100대를 초도양산 계약하면서 부품원가를 부풀려 약 40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 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방위사업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37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인쇄업체 ○○대표로서, 신고자가 ○○시 ○구의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B ○○시 ○구청 공무원의 묵인 하에 계약된 인쇄면수 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는 2008~2009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자치법규집 추록을 발간하면서 계약면수대비 납품면수를 적게 납품하여 총 2회에 걸쳐 217만 원을 과다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납품받은 추록에 대한 배부근거 및 수령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적게 납품된 추록물에 대해서는 예산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수령증 미 징구 등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 결과, 약 217만 원 환수 및 관련 공무원 2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1. 7. 1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38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와 3인은 인쇄업체 대표들로서, 신고자가 ○○시의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B ○○시 공무원의 묵인 하에 계약된 인쇄면수 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와 3인은 2010년 제2~3회 추록의 경우 전체 발간부수(32부)에 대해 1부당 계약면수 대비 납품면수를 각각 165면, 170면 적게 납품하여 300만 원을 과다청구 하였고, 피신고자 B는 납품받은 추록에 대한 수령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을 지급하여 적게 납품된 추록물에 대해서는 예산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수령증 미징구 등 관리부실에 대해서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북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북도 조사 결과, 300만 원 환수 및 담당 공무원 2명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1. 7. 2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39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의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인쇄업자 상호 묵인하에 계약한 인쇄면수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거나, 발간 단가산정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추록 납품 내용과 상이한 과다한 발간비용 지출 및 검수, 배부 등 관리부실과, 부당한 인쇄비용 이득 취득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도의 조사결과, 법무 업무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경징계 및 훈계 조치. 추록 납품 인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취득한 비용 827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1. 7. 2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0호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관련 예산낭비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5.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의 자치법규 추록 발간과 관련, 담당공무원과 인쇄업자 상호 묵인하에 계약한 인쇄면수보다 적은 인쇄면수를 납품하거나, 발간 단가산정이 불명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추록 납품 내용과 상이한 과다한 발간비용 지출 및 검수, 배부 등 관리부실과 부당한 인쇄비용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위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남도의 조사결과, 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 인쇄업자에 대해서는 부당 취득 비용 약 321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1. 6. 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2호

민원담당 공무원과 공모한 보조금 편취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특정인들에게 각종 농·축산 관련 보조금을 집중적으로 지급하면서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있고, 피신고자 B, C, D는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함에 있어 피신고자 A와 공모하여 허위로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 및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농·축산 관련 사업 보조금 4억 2,200만 원을 부적정 집행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수사결과, 2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 통보일자 : 2011. 12. 1.
- ○○도 감사결과, 1명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보조금 9,000만 원 회수 및 반납처리
※ 통보일자 : 2011. 9.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3호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B는 ○○광역시 ○○영상센터 경관조명공사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시공실적 확인을 의도적으로 높게 처리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자 제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경관조명공사 낙찰자 적격심사를 하면서 특정업체 시공실적을 높게 평가하고 허위 시공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 부적정한 업무 처리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사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광역시 및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결과, 1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1. 6. 30.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2명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11. 8. 12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4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비 편취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 수 천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공사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피신고자 A의 공사비 허위 청구 등을 묵인해 주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면서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비 1,326만원 상당을 받아 편취하고, 공사 감독관인 피신고자 B에게 각종 비리 은폐나 사전 정보제공 등의 대가로 골프채 등 선물과 액수미상의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공사비 약 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 되어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12.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5호

도로공사비 등 과다 청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시에서 발주한 도로공사를 시공하면서 1차 포장 공사와 1차 및 2차 토목 공사, 2차 가설교량공사 등을 당초 설계내역대로 시공하지 않고도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준공정산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골재납품물량 667m³, 사토반출물량 총 1,572m³을 과다 청구했고, 당초 교량길이 25.5m를 시공토록 되어 있으나, 15m만 시공하고도 공사비를 당초 내역서대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2명 경징계, 1명 훈계
 - ※ 통보일자 : 2011. 8. 4.
 - 경찰 수사 중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48호

○○정보화협회 ○○사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7.경 ○○시 등으로부터 ○○정보화교육, ○○공부방 운영 보조금 등 수 억 원 상당을 지원받아 운영해 오면서 직원을 허위등록 하거나 강사료와 사무용품 구입비용 등을 부풀려 정산하는 수법으로 수 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한 신고자 진술과 증거자료,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시 등으로부터 약 1억 3,000만 원을 지원 받아 정보화협회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허위 등록하거나 정보화사업 강사료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허위정산 하는 수법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북도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49호

○○시 학교보안관 사업 입찰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운영업체를 선정 하면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공고 하여야 하나,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하여 사업자로 선정 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학교보안관 운영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특정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전반적인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감사원 조사결과, ○○시 주의 조치
 - ※ 통보일자 : 2011. 12. 30.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51호

○○여성인턴제 정부 지원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6. 2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이 ○○여성인턴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하는 센터 소속 요양사들의 급여 내역을 허위로 꾸며 관할 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지원금 수 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사 9명이 여성인턴 지원금 지급 조건에 미달함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관할기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1,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관

- 경찰 조사결과, 정부지원금 750만 원 편취 확인 2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9. 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52호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지자체로부터 영화체험마을 사업비 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영상체험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 수 천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허위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비를 처분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7,427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53호

음식박람회 행사등 국고 자금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부부 사이로 2010년 ○○ 국제 테이블 웨어 박람회 등 이와 유사한 음식 박람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허위 정산서류를 꾸며 제출하는 수법 등으로 매 회당 수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의 국고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부 등에 제출된 정산내역서, 2011년 개최된 테이블 웨어 박람회 현장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2010년 음식박람회를 진행하면서 총 1억 2,850만 원 상당의 국고를 편취하였고, 2004년부터 2010년경 사이에도 수 억 원 상당의 국고를 지원받아 편취한 의혹에 대하여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54호

실업자 우선선정 직종훈련 훈련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운영하는 ○○광역시 ○○교육원은 2010년 우선선정직종 훈련 ‘공조냉동기계’ 분야를 위탁교육 하면서 훈련비 전액이 국비로 지원 됨에도 교재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총 7권의 교재 중 2권만을 지급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는 ○○공단에서 주관하는 2010년 우선선정 직종훈련 ‘공조 냉동기계’ 위탁훈련(4개반 114명)을 실시하면서 교재 7권중 2권만을 지급하고 훈련생들에게 허위 수령증을 받아 훈련비를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와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고용노동부에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미지급 교재비 114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11. 12. 23.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55호

장기요양급여비용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 B는 요양사들의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 수 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C는 동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신고인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을 허위 기재하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걸쳐 약 844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시간을 허위로 이중 청구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준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59호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편취 등 의혹
------------	--------------------

1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사회복지사를 평소 상근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근 근무한 것처럼 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교회 전도사를 종사자로 겸임케 하여 인건비를 지출하고 급식 아동수를 부풀리거나 4대보험을 미납하는 등 부적절하게 아동센터를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아동센터 등록종사자 상근근무 허위사실 등이 확인되고, 보조금 인건비편취 및 예산 손실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와 감사 조치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11. 9. 29.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에게 보조금 1,080만 원 환수, 해당시설 시설장 교체 및 ○○시 여성가족과에 대해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11. 9.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60호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구청에서 발생하는 하수준설토를 일부만 정상 처리하고 타 장소에서 유사 폐토를 상차해 처리하는 수법으로 2003. 5.경부터 2011. 6.까지 ○○구로부터 24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고, 구청 공무원 ○○○는 하수준설토 야적장 감독 출장시 피신고자들에게 출장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등 용역비 편취 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부패 의혹이 확인되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용역비 환수 및 감사가 필요성도 있어 시차를 두고 ○○시에 이첩하고자 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결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9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피의자 6억 500만 원 공탁)
※ 통보일자 : 2011. 12.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63호

○○중양회 광고수당 횡령 의혹 등

2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7. ~ 2010. 경에 주간신문 ○○뉴스에 ○○화재 등 으로부터 보험광고 등을 수주하고 광고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공제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상해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대가로 보험계약 건당 수수료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한 피신고자들은 ○○회 주간지인 ○○뉴스에 광고를 수주한 직원들에게 광고수당을 지급하면서 약 2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한 의혹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 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중소기업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2억 1,300만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손실시킨 사실확인, 1명 불구속 송치
- ※ 통보일자 : 2011. 10. 25.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64,65호

하수관거 정비 공사비 부당청구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1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시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업체 현장 대리인으로서, 동 현장 B·D공구를 공사하면서 하수관 매립시 토사붕괴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시설물 중 당초 설계상 시트파일 공사구간을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로 시공하여 공사비를 부당청구하고, 피신고자 B는 ○○공단 소속 직원들로서 이 사실을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은 B·D공구 28개 현장, 총 1,109m를 당초 설계대로 시트파일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공사 기성금 청구서류 공사현장 사진을 포토샵 등으로 조작하는 수법을 동원하여 비용이 저렴한 간이 흙막이 등으로 시공하여 7억 5,000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현장 검측 시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해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환경부 이첩

4. 처리결과**▶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하수관거 공사 관련하여, B·D공구 9억 8,000만 원, C공구 2억 원, E 공구 1억 7,000만 원 등 총 13억 5,000만 원의 공사비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장대리인 및 관계공무원 7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11.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67호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약제비)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7. 2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가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속여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세청 통관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거나 타사로부터 구입하였음에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제비 19억 3,9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각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68호

국립대 교수의 공갈에 의한 산학협력사업 인건비 취득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6.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산학협력 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공갈에 의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취득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고자로 하여금 2개의 연구비 지급계좌를 개설토록 하여 인건비 5,800만 원 중 617만 원을 공갈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신고자 이외에도 연구 사업에 참여한 다른 연구원들도 2개의 인건비 지급 계좌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사실을 인정키 어렵고 해외 체류 중 이어서 입국시까지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1. 12. 26

▶ 위원회 검토의견

- 검찰 수사결과에 따른 교과부의 처리결과에 따라 조사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고자 함.

분과2011-69호

정부지원 바이오광 사업 관련 연구비 횡령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4.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정부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수행을 하지 않은 연구원의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 지도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참여연구원 인건비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으면 해약을 끼칠 듯한 태도로 신고인 등의 인건비를 갈취, 중기원의 지원을 받은 (주)○○○테크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허위 등재하여 인건비를 횡령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70호

군수 가족묘 진입로 공사 관련 예산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군수는 자신의 동생 소유의 가족묘 인근에 차량 진입이 가능하도록 피신고자 B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지시하였고, 이에 피신고자 B, C 등은 주민숙원사업인 것처럼 소하천사업 예산으로 지출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약 1억 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군수 가족묘 차량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을 편법으로 편성하여 추진하였고, 소하천사업 담당자가 아닌 주민숙원사업 담당공무원이 농로확포장 공사를 하는 등 소하천 사업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북도 이첩(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78호

구제역 돼지 살처분 보상금 부당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에 소재 영농법인 산하 3개 직영농장의 살처분 과정에서, 실제 사육두수를 부풀리기 위해 농장일보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살처분 보상금 약 65억원상당을 허위로 청구하고, 관련 공무원은 위와 같이 부당하게 산정한 처분두수를 알면서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농장일보, 사료 현황 등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살처분 돼지 약 5,790두를 부풀려 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억2,65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담당공무원은 허위청구 사실을 묵인하거나 유착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보상금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농림수산식품부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피신고자 등 산하 양돈농장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실제보다 돼지 살처분 두수 9,502마리를 부풀려 산정하여 도합 18억원의 보상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혐의로 법인대표, ○○시 공무원 등 15명 불구속 기소(변제 공탁 받은 15억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12. 1. 26.

- ○○도는 ○○시에 대해 살처분 보상전반에 대한 조사 진행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79호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 사업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사업비 44억 원)을 하면서 피신고자 B와 공모하여 발주기관, 계약방법 등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스타디움 전광판 교체사업을 하면서 특정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입찰공고 전 제안서 사전제공, 발주기관 및 계약방법 변경, 중소기업 경쟁제품 해제, 긴급 입찰공고 추진 등 특정업체가 유리하게 해 주고 대가를 받은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광역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80호	지방경찰청 및 ○○공단 직원들의 예산 낭비 의혹 등
------------	------------------------------

1분과위원회(2011. 8. 22.)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08. 6. ~ 2010. 12.경 ○○지역에 설치된 교통단속 장비 이전공사 등을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출장비와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허위청구 하였으며, 파견 나온 공단 직원들로부터 수 회에 걸쳐 회식비 등을 요구하는 등 비리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확인결과 피신고자들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면서 ○○업체에게 설치공사 전건을 수의계약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공단 소속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를 허위청구하거나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를 접대비 명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이 일부 확인 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관련 피신고자 3명 징계 · 중징계 요구 및 1명 수사 의뢰
※ 통보일자 : 2011. 12. 27.

분과2011-85호

지방○○청 공무원의 허위 출장 등公款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원 및 ○○지방청에 근무하면서 2009. 12.부터 2011. 6.까지 자신은 물론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허위 출장신청을 강요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업체 제공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소속 직원들에게 허위 출장을 강요하여 허위 출장비 약 300만원을 지급받아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돈을 마련하라고 강요하였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직무 관련 업체의 제공 협찬금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혐의가 일부 확인 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가보훈처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국가보훈처 감사결과, 혐의사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조치(중징계 1, 경고 등 4명 및 621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11. 11. 11.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86호

지역연구산업 육성 사업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립대학 교수로서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을 추진 하면서, 홈페이지 제작비 등 약 9,000여만원을 관련 업체에 지급한 후 되돌려 받거나 기업지원비 명목으로 허위지출을 증빙 하는 방법 등으로 수 억 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홈페이지 제작비용 일부를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고, 허위의 지출 증빙서류로 기업지원비와 직원 인건비 및 연구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편취하는 등 도합 6,000여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 결과, 관련 사업자로부터 도합 4,800만 원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되돌려 받은 피신고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11. 15.
- 지식경제부 감사 결과, 부당하게 지원받은 기업지원비 1,352만 원 환수 및 사업 재평가
※ 통보일자 : 2011. 10.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88호

군부대 공용물품 사적사용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군 소속 ○○전대장으로 관용차량 등 공용물을 사적 사용하고, 부대지휘운영비 횡령, 금품 등 수수의혹, 안마 등 사적사역 강요 및 신고사항 조사 시 부하장병에게 허위 진술 지시 등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관용차량 등 공용물사적 사용, 부대지휘 운영비 횡령, 금품 등 수수의혹, 안마 등 사적사역 강요 및 위원회의 신고사항 조사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개연성이 상당 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방부검찰단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국방부 검찰단 수사결과, 업무상횡령, 직권남용 및 권리 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2011.11.25.)
※ 통보일자 : 2011. 12. 12.

▶ 위원회 검토의견

-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

분과2011-91호

자식경제 기술혁신사업비 횡령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모하여 ○○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개발된 연구과제를 신규 과제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정산 처리하는 수법으로 정부 출연금 수 십억 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들은 2008년 ~2010년 사이에 전력산업 연구개발,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발전사 협력연구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허위 정산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출연금 도합 15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횡령(유용)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92,93,
94,95,96호

○○공단 클린사업 자원금 편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공단에서 지원하는 클린사업과 관련하여 1.6톤 이하의 지게차를 구매하는 경우 구입가격의 50%(대당 1,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고 순차공모 하여 지원대상이 아닌 2.5톤 지게차를 구매·제작하면서 1.5톤의 지게차에 허위 사양 레벨을 부착 하는 방법으로 도합 6억 2,00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의 신고사실, 관련자 진술 및 공단의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및 관련자들은 32개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대해 공단에 부당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기관의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 수사 결과,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의 의혹과 관련 115명(법인 30곳 포함)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 통보일자 : 2012. 1. 18.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99호	기부채납 토지 등기미필 공무원의 직무 유기 등 의혹
------------	---

1분과위원회(2011. 10. 10.)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구 도시관리국장 등으로, 기부채납지 등기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들로서, 2005. 4. 4. 증여인 ○○○의 기부채납지인 ○○동 토지(192.5㎡)의 등기이전 제반서류를 제출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청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신고자 및 관련자들의 직무 유기 등에 대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02호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관련 용역비 부당집행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0. 1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시 공무원으로서,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여야 함에도 다른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적격성 조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민간투자 사업을 하면서, 광역교통계획 확정으로 총사업비가 3,050억 원에 책정 되었음에도 한국개발연구원이 아닌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용역결과에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용역비 전체를 지급 하여 용역비용을 과다집행 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적격성 조사 재검증도 미실시한 것이 확인이 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 결과, 용역비 과다집행비용 280만 원 환수 및 적격성 조사 재검증 실시, 담당 공무원 훈계조치
※ 통보일자 : 2011. 11.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04호

문화축제 행사 보조금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1. 8.~2010. 9.까지 (사)○○문화축제제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재임기간 중 ○○남도 등으로부터 문화축제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사업비 집행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보조금 수억 원을 횡령하였고, 한국 ○○회로부터 2008년과 2010년도에 ‘○○문화제’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행사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축제사업비 집행시 간이영수증에 의한 정산, 자부담금 축소정산, 사업비 송금 후 일정액 돌려받기, 무상 제공된 행사부스 사용료 징수 등으로 비자금 약 5억 원을 조성하여, 그 일부를 전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도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05호

수도사업소 타일 납품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타일 판매업체 대표 피신고자 A는 2009. 7. 23 ~ 2011. 7. 21까지 ○○시 ○○수도사업소 등과 특허제품 메탈록스타일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실제로는 일반 하이그로시 타일을 납품하는 수법으로 수 십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D는 배수지 공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급자재 선정과 구매 계약을 피신고자 A에게 유리하도록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계약서와 다른 제품이 납품되었음을 알고도 묵인해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 A의 사기혐의와 피신고자 B~D의 업무상 배임 의혹 등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시, ○○남도, ○○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06호	구청 공무원의 불법예식장 운영 관련 묵인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10. 24.)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 5.경 ○○구 소재 ○○파이프웍스동 1층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의해 예식장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법 예식장 운영을 계속 하고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진술, 관련기관 자료, 현장 확인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운영 하는 예식장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도록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시로 이첩(경찰청 송부)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구 조사결과, 불법예식장에 대해 2011. 12. 21. ○○경찰서에 고발 하였고, 예식장건물인도 등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후속 조치 예정임
- ※ 통보일자 : 2012. 2.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13호

열차부품 납품 관련 공공기관 예산편취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5년부터 한국○○공사, ○○공사 등에 열차부품을 납품하면서 허위로 수입신고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모조품들을 독일산 수입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단가를 높게 받음으로써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납품업체 관계자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한국○○공사, ○○메트로, ○○공사에 약 17억 5,382만 원에 해당하는 열차부품을 납품하면서, 국산을 독일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무역관련 서류를 세관에 수입신고한 후, 모조품을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를 부풀려 수 억원 상당의 공공기관 예산을 편취한 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관세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14호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사업 관련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등
-------------	---

2분과위원회(2011. 11. 15.)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2010. 12. ○○산업지원단으로부터 약 24억 원을 지원 받아 해양플랜트기술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신의 처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연구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돌려 받아 회사경영 등에 사용하여 약 15억 원을 횡령하고, 피신고자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사실에 대하여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해양플랜트 ○○ 패키지 개발” 과제를 수탁 받아 수행하면서, 연구개발 장비 및 재료를 허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 약 15억 원 상당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일부 혐의가 확인 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15호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 낭비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2009. 12.경 피신고자 B로부터 TV받침대 겸 도서함 96개를 구매하면서 모두 납품된 것처럼 허위 검수하여 미납된 물품대금 수 백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 B는 위 물품 대금 1,334만 원을 모두 지급받고 물품 30개를 납품하지 않아 부당하게 물품대금 417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물품이 납품되지도 않았는데 허위로 검수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고, 물품대금을 지급받고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방위사업청, 조달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18호

○○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청 공무원들은 가구 납품업체 대표 A로부터 납품검사 2회 불합격 판정 사실을 지연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 불합격에 따른 ○○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약 14일간 지연 처리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초등학교 공무원 2명은 불합격 판정된 제품을 반품조치 하지 아니하고 묵인하여 업무를 해태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청 공무원 2명은 납품업자의 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되자 청탁을 받고 납품계약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고, ○○초교 등 행정실장 2명은 납품검사 불합격 통보를 전달받고도 반품조치하지 않고 검수 승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등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조달청 및 ○○시교육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19호

○○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1. 21)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가 피신고자 B 업체인 (주)○○피아의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고 보증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피신고자 B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A는 2009. 9. 19. ~ 2009. 10. 25.까지 피신고자 B 업체의 기술보증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를 실제보다 높게 해주고 보증서를 발행해 줌으로써 피신고자 B가 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는 대가로 피신고자 B로부터 뇌물 9,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금융위원회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1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02. 7.경 ○○도 ○○시에 신축중인 상가건물이 사용승인 되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2002. 3.~2006. 5. 23. 건축주로부터 상가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신축중인 상가건물의 사용승인을 관계 공무원에게 알선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2호

국립○○원장의 간접비 등 부당집행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소속 ○○교육원 원장으로, 소속기관이 연구용역 위탁수행 시 간접비 집행대상 기관이 아님에도 용역비의 일부를 간접비 명목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면서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연구용역 수행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집행하여 해당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참고인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업무상배임 또는 횡령 의혹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3호

○○중양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중양회는 ○○부와 급식품목협정 및 공급계약을 맺고,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선급금을 받아 군납물품을 구매·보관하는 바, 피신고자 등은 2009. 11.경 군납용 대멸치 16,740kg 7,100만원 상당, 2010. 4.경 소멸치 30,000kg 2억 1,700만원 상당을 군납 이외로 판매·횡령한 의혹 등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부 직원의 진술, 관련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의 업무처리 적성성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국방부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6호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 위탁 용역비 부당수령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레일(주) 대표이사로 「모타카 운전 및 철도장비 운영업무위탁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9. 1. ~ 2011. 10.까지 위탁용역비 청구과정에서 용역 순원가에 부가세를 포함할 수 없음에도 재료비와 정비비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시켜 용역 순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급가액을 산출한 후 부가세 10%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약 4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탁용역비 순원가에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청구하여 편취한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수사가 필요하고, 예산손실 등 사업전반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7호	○○진흥회 직원의 걷기대회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	----------------------------

1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	---------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진흥회 사무총장으로 2010. 2. ~ 11.경까지 ○○공단 등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각종 걷기대회를 주최하던 자로, 2010. 10.경 ○○공단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사전 지원받아 제1회 ○○걷기대회를 주최하면서 ‘진행팀장 보상비’ 등 250만 원을 중복 수급하는 등, 각 주최 걷기대회에서 불상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업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기금부적정 집행액 275만 원 환수, 2년간 보조대상단체 선정 제외 및 보조금 지원중단 조치
 - ※ 통보일자 : 2012. 1. 18.
-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11-128호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정부출연금 부당편취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중소기업 대표들로서, 피신고자 A는 2009년~2011년 중소기업청 주관 신제품개발사업 및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이미 개발된 제품의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하고, 피신고자 B는 2008년~2010년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에 대해 허위 물품 구입 등을 통해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09년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허위 제출하여 정부출연금 2억을 편취하고, 해외체류 중인 연구원을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3,4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와 상관없는 물품구입 및 교육영수증을 첨부하여 정부출연금 3,429만원을 편취한 의혹이 일부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29호

공공기관 자판기 수익금 관련 부패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외 ○○회 임직원들은 2003년 7.부터 공금으로 구입한 커피 자판기 450대를 자신들이 출자한 직장새마을금고에 편법으로 위탁 운영하도록 특혜를 주고, 2003. 7. 이후 커피자판기운영 공개입찰시 예상 되는 약 9억 8,000만 원의 임대수익금을 스스로 포기하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벌어들인 커피자판기 수익금 135억 원을 전액 새마을금고에 위탁수수료로 제공하고, 자신들도 출자배당금으로 일부를 고이울로 지급받는 등 배임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패의혹에 대하여 일부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를 위해 경찰청으로 이첩하고 제도개선 및 전반적인 감사를 위해 감독기관으로 각 이첩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농림수산식품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34호

○○시티 관광자원화 사업보조금 횡령 의혹 등

1분과위원회(2011. 12.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보조금을 교부 받아 집행하면서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계약절차를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에게 용역사업을 몰아주고 사업담당 공무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은 ○○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현지 활동비를 임의적으로 인상하여 횡령하고, 특정업체와 용역사업 4건(1억 8,63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업체와 공모의혹이 있고, 교부된 사업 보조금을 일부 횡령하고 용역 사업을 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케 한 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경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조사 중

분과2011-135호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비 횡령 등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가 출연한 ‘습식워터젯 초정밀 절삭가공시스템 개발’ 등 3건의 과제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목적과 무관한 개인 회사 운영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 허위조작 등 부정한 회계정산으로 약 4억3,000만 원의 예산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 기술 혁신사업 공동운영 요령 등 규정에 위배하여 총 55회에 걸쳐 컴퓨터 조작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허위 조작하고, 총 40회에 걸쳐 목적외 용도로 사업비를 지출하는 등 부정한 회계정산을 통해 도합 4억3,144만 원 상당의 정부출연 예산을 횡령한 것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이첩사건 처리결과 추록

분과2009-106호

국제자원사업 물품조달 관련 비리 의혹

1분과위원회(2009. 9. 7.)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부 지원물품 조달’ 입찰과정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조작하여 1, 2위 업체를 바꿔치기하고, 낙찰업체에 특정업체 제품을 납품토록 강요·지시하여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특정업체에 이익을 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기관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전자 조달시스템을 조작하고 특정업체의 제품이 납품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외교통상부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조작 혐의는 인정되나 신고자 등이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유예
- 외교통상부 조사결과, 1명 경징계, 1명 주의처분
※ 통보일자 : 2011. 8. 1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34호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 원형보전지 개발 묵인 의혹

1분과위원회(2009. 11. 16.)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원형보전 지정지역을 임의로 축소·변경 고시하여 원형보전지를 개발하도록 묵인하고 상호 공모하여 토지의 미등기 매입·매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원형보전지에서 채취한 토석을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원형보전지역을 임의로 축소·변경하여 위법한 행정 처리를 한 사실과 사업시행자 등의 미등기 전매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남도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원형보전지 훼손행위 확인되어 1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8. 9.
- ○○남도 조사결과,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 소홀 2명 훈계, ○○시 주의 조치
※ 통보일자 : 2009. 12. 1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분과2009-150호

신축건물 허위 사용승인 비리

2분과위원회(2009. 12. 30.)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신축건물을 사용승인 받아 불법으로 증축·용도 변경을 하고 관련 공무원은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묵인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등의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신축 건물의 각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용도 변경하고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 하여 ○○구청에 제출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검찰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신축건물의 불법 증축·용도변경 및 허위감리 보고서 제출혐의가 확인되어 3명 불구속 기소
※ 통보일자 : 2011. 8. 10.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제2절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 신고자 보호
- 신고 보상금
- 신고 포상금

신고자 보호

1. 의안개요

- 요구인은 상급자의 부패행위를 외부기관(○○부, 위원회, 감사원)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여, 이에 대한 원상회복조치로 계약(계약직원의 계약연장 관행) 연장이 필요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제7항에 따라 ○○○ 연구원장에게 신분보장조치인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3년)를 요구함

2. 심의내용

- 요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신고 경위, 근거자료의 객관성, 조사결과와 신고내용과의 일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면 보호 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공직자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로 볼 수 있고, ○○○ 연구원의 계약 연장 관행, 인사위원회 회의자료, 인사팀장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요구인의 부패행위 신고가 요구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직접적·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연구원의 계약연장 거부는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 연구원장에게 불이익처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3년)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3. 의결결과

○○○ 연구원장에게 요구인에 대한 계약연장 조치(1년~3년)를 요구함

신고 보상금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6. 9. 21.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종계약 및 기성금 편취비리」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2. 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공사비 682백만 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국도포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의 연약지반처리는 설계상 해사를 운반포설 하여야 함에도 거리가 가까운 인근 골재채취장의 육사로 시공하는 등 편법으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들에게 부당지급 되었던 공사비 682,000,00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75,36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28호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전문위원회(2011. 3. 21.)	보상심의위원회
---------------------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5. 6.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을 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후 2008. 3. 27. 사망하여 그 법정 상속인이 2010. 11. 17.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보상금 151,702,36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희생자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관련자 보상 심의위원회에 허위의 인우보증서와 사망경위서를 제출하여 보상금 151,702,36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수령한 희생보상금 151,702,36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7,23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7. 9. 10.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을 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0. 12. 17.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불법 편취한 공사비 4,625,968,072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설계상의 가시설물 설치구간에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하여 공사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아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불법 편취한 공사대금 4,625,968,072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371,038,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53호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1. 6.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1. 11.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발주사인 한국○○공사가 원도급사와 임의반입된 토사에 대한 공사금액 3,227,000,000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당초 계약대로 지정된 토취장에서 공사에 사용되는 사토를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주변의 여러 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질 낮은 사토를 반입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한국○○공사가 원도급사와 임의반입된 토사에 대한 공사금액 3,227,000,000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99,62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1. 9.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낭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4. 6.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발주처인 ○○시가 공사 미시공분에 대한 편취예산 160,261,131원을 환수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가 발주한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를 시공하면서 국고 등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주처인 ○○시 상하수도 사업단에 당초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허위로 준 공내역서를 제출하여 공사비를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시가 미시공분에 대한 편취금액 160,261,131원을 감액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8,436,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55호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 수수 및 횡령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문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10. 2. 17.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금품 수수 및 횡령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4. 7.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과다계상된 공사비 278,089천원 감액변경과 피신고자들로부터 총 39,700천원 추정·몰수 등 총 317,859천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비용의 절감 및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시공사인 ○○종합건설(주)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감리회사, ○○종합건설(주)와 공모하여 실제 공사에 필요없는 자재를 부풀려 계상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약 2억원을 업무상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및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가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과다계상된 공사비 278,089천원 감액변경과 피신고자들로부터 총 39,700천원 추정·몰수 등 총 317,859천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되었으며, 위 비용절감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50,500,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11. 10. 「군수의 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4. 15.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는바, 위 신고로 부당집행된 업무추진비 14,757,87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인 ○○군수 등이 2008년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국가정보원, 경찰관계자, 기자, 군부대장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약 1,600만원, 직원격려금, 양복, 구두구입, 화환구입 등에 약 4,200만원을 부당 집행했다며,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일부 부당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업무추진비 15,757,87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되며, 위 수입의 회복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2,20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57호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편취」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전원위원회(2011. 5. 16.)	보상심의위원회
---------------------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4. 13. 「○○체육회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편취」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숙박업주와 결탁하여 영수증 발급을 통해 객실료 및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훈련비 33,700천원을 부당편취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형사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이익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점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체육회 소속 리듬체조 분야 전임지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7년 2월부터 2009년 2월 사이 서울 ○○구 소재 ○○관광호텔에서 훈련차 매년 2회씩 숙박을 하던 중 업주와 결탁하여 영수증 발급을 통해 객실료 및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300만 원 이상의 훈련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로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훈련비 33,700천원의 부당편취사실 적발과 관련자들의 형사처분 등 공공기관의 재산상이익과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점이 인정되므로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결정결과

금 5,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10. 1. 14.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2. 22.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국가출연금 167,701천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2005년도에 이미 제작·납품한 장비를 2007년에 신규로 개발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7년도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의 국가출연금을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국가 출연금 167,701천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30%를 감액하여 지급

3. 의결결과

금 20,63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141호	「상수도급수관 개량공사비 편취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	------------------------------------

전원위원회(2011. 10. 17.)	보상심의위원회
----------------------	---------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10. 4. 2. 「상수도 급수관 개량공사비 편취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8. 4.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상수도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금 25,520천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아파트 24세대에 대하여서만 급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62세대 전체가 교체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꾸민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제출하여 공사비를 지원받은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지원금 25,520천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30%를 감액하여 지급

3. 의결결과

금 3,572,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7. 17. 「○업 면세유류 부정수급 등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8. 5.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이 부당하게 감면받은 276,744,925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들이 유가보조금과 ○업용 면세유류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목적외로 사용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하게 감면받은 276,744,925원 중 104,404,82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44,744,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143호

「OO포 납품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11. 10. 17.)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9. 3. 18. 「OO포 납품 비리」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3. 3.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2,628,661,555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OO포 납품업체인 피신고자가 구성품의 구입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후 정산과정에서도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납품대금 2,628,661,555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263,719,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05. 8. 2.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2011. 1. 6.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가 편취한 6,504,840,030원이 환수되는 등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청인은 방위산업체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용 주추진 전지 등 각종 전지의 교체 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편취한 사실, 즉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 (법 제2조제4호 나목)를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피신고자가 부당 편취한 대금 6,504,840,030원이 환수되었으며, 위 환수가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하고, 신청인이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30%를 감액하여 지급

3. 의결결과

금 312,335,000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제2011-178호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이의신청)
전원위원회(2011.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2010. 12. 20. 제13차 전원위원회의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보상금 결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도 2011. 10. 4. 다른 과제의 환수금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상금 지급 신청(이의신청)을 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2항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환수는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직접적 관련성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당 인과관계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진 다른 과제의 편취금 환수를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환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동 내용은 2010년 제13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된 것이며, 그 이후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바도 없으므로 “다른 과제의 환수금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 는 신청인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의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

3. 의결결과

기각

신고 포상금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8. 31. 「공사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공사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재활용 및 친환경사업 분야 주력회사인 (주)○○의 기술이사를 겸임하면서 업무처리중 알게된 공사계약, 기술 및 단가 등 관련 정보를 (주)○○에 제공하여, 동 회사가 ○○공사로부터 개방형 방음벽공사를 수주받도록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바,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관련자가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1-180호	「농지 매입자금 사기대출 등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

전문위원회(2011. 12. 19.)	보상심의위원회
----------------------	---------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3. 10. 「공사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3자 이익도 모 의혹」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자가 ○○공사에서 운영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을 악용하여 농지의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액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초과이익을 다수에 걸쳐 편취하고, 이와 관련된 농지매매계약서를 농지은행에 제출하여 장기·저리로 용자를 받아 국가예산을 낭비하였으며 영농규모화사업을 담당하는 ○○공사 직원들이 업무지침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에게 저리 대출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바, 이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관련자들이 형사처벌 및 징계처분을 받아 부정용자금 회수에 기여한 바가 크고 농지은행 용자 관련자금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09. 9. 1. 「지자체의 부당한 변호사비 지원 예산낭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시에서 단속업무의 권한이 없는 청원경찰이 불법현수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위 청원경찰의 폭행사건에 대하여는 예산으로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변호사비용을 지원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바, 이는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훈령이 폐지되고 조례가 전부 개정되는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2011-182호	「공공기관 실내건축 공사 입찰비리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문위원회(2011. 12. 19.)	보상심의위원회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2010. 5. 27. 「공공기관 실내건축 공사 입찰비리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하였는바, 위 신고건의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는 (주)○○의 대표이사인 피신고자가 ○○연구원에서 발주한 홍보관 실내건축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연구원 기획조정부장에게 사전 로비하였고, 기획조정부장은 관련공사의 입찰공고가 나기 전에 피신고자에게 입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주)○○이 공사업체로 낙찰되도록 입찰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신고한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법 제2조 제4호 가목의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위 신고로 말미암아 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아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3. 의결결과

금 5,000,000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제3절 공익 신고사건

■ 2011 공익신고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A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피신고자 B 및 같은 C를 포함한 다수의 성명불상 덤프트럭 운전자들과 공모하여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하였으며,
- 피신고자 B 및 같은 C는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피신고자 A로부터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등유 및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 및 사용한 의혹이 확인되어 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관할 감독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3. 의결결과

경찰청, 강원도 ○○군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수사 결과 피신고자 A가 굴삭기와 덤프트럭 연료로 보일러 등유 44,915리터(금액 53,001,090원)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 처분
※ 조사결과 통보 : 2012. 1. 31.
- ○○군 조사 중

분과2011-130호

○○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열차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

1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규정』(○○공사 사규)의 검수기준에 따라 ○○ 견인전동기를 정기적으로 검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아, 2011. 5. 8. ○○130열차 운행 중 견인전동기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기관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공사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의혹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이 필요함

3. 의결결과

국토해양부로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기관
 - 조사 중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약국은 약사면허 대여업주가 약사 1명 및 계산원 1명과 함께 2010년 00월경 ○○남도 ○○군 ○○면에서 개설한 약국으로서, 공익신고 당시 약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 일반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 행위 등을 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이 사건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계산원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계산원의 성명과 이력까지 알고 있는 점,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약국에서 의사복장을 착용하지 않은 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자료가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97호의 규정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약사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이 됨

3. 의결결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수사기관

- 경찰청 및 보건소 : 수사 중

분과2011-132호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및 약사면허대여 의혹

2분과위원회(2011. 12. 19.)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피신고자 ○○약국은 약사면허 대여업주가 약사 1명을 고용하여 ○○남도 ○○시에서 개설한 약국으로서, 약사가 아닌 자인 계산원이 의약품 판매 행위를 하고 있어 공익침해행위의 의혹이 있음

2. 의결이유

- 이 사건 신고의 경우, 신고자가 약사가 아닌 자가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를 고용하면서 감기약 등 일반적으로 저렴한 약제는 약사가 상담하면서 장기간의 복용을 요하는 약제에 관하여는 무자격자인 계산원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신고인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 약국에서 카운터가 복약상담을 하는 내용의 현장 녹취자료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별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97호의 규정에 따른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약사법」 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되고, 약사자격의 정지 또는 취소대상이 됨

3. 의결결과

관할 보건소 및 경찰청 이첩

4. 처리결과

- ▶ 조사·수사기관
 - 경찰청 및 보건소 : 수사 중

1. 의안개요

- 「무면허 의약품 조제 등 의혹」 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자들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자로서,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자료(CD)에 따르면, 약사가 아닌 테도 가운을 입고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약사법」 제23조 및 제4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관할 행정기관으로 이첩하고자 심의 · 의결

2. 의결이유

- 약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조제 ·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 'II. 개별기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므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등은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될 개연성이 상당하여, 이에 대한 공조 조사 ·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청과 관할 행정기관인 ○○시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결

3. 의결결과

경찰청과 ○○시로 이첩

4. 처리결과

▶ 조사 · 수사기관

- 관할 행정기관, 약사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부과 후 경찰에 고발
※ 통보일자 : 2012. 1. 18.(경찰은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최종 조사(수사)결과 접수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 결정

제4절

공익 신고자보호

- 신고자 보호

분과2011-124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분과위원회(2011. 12.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신청인은 의약외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2011. 8. 10. 의약외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다른 3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며 ○○청 및 ○○경찰서에 고발하자, 위 3개 업체 중 1개의 업체에서 신청인도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제보함
- 이에 ○○청장이 약사감시를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불이익조치(판매정지 및 광고정지)를 할 예정임을 통보하자, 신청인이 2011. 11. 11. 우리 위원회에 이에 대한 금지를 신청함

2. 의결이유

- 신청인이 2011. 8. 10.자로 3개 의약외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하여 ○○경찰서에 한 고발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 고발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일(2011. 9. 30.) 이전에 이루어져 법 적용 외의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청장의 판매업무 정지 등 불이익조치에 대한 금지 신청은 부적법함

3. 의결결과

각하

제5절 기 타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1. 의안개요

- 2011년 9월 3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심의내용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규정(안 제2조, 별표 1)
- 행정처분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추가 공익신고 기관 규정(안 제6조)
- 위원회의 공익신고 확인, 이첩 처리절차 등(안 제7조~제12조)
- 조사기관 등의 신고 처리절차 및 결과통보 등(안 제13조~제14조)
-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및 신변보호 절차(안 제16조~제17조)
- 보호결정 절차 및 행정기관 협조요청 범위 구체화(안 제21조, 제25조)
- 보상금 지급사유 및 최고한도액 규정(안 제26조, 제27조)
- 수입회복 등에 보상금 감액 및 공직자의 보상금 지급 제한 규정(안 제28조, 제29조)
- 구조금 지급 산정 기준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 제36조)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37조, 별표3)

3. 의결결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원안의결

제2011-127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제10차 전원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어 9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필요하여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을 국민권익위원회 예규로 제정·시행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신고 접수 절차 규정(안 제3조 제1항~제4항)
- 신고사항 확인 절차 규정(안 제9조~제12조, 제14조~제16조)
- 공익침해행위 신고사항 처리 기준 규정(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절차 규정(안 제23조, 제24조)
- 제도개선 사항 및 신고기록의 보존 절차 규정(안 제26조, 안 제6장)

3. 의결결과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2011.9.30 시행)

1. 의안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어 9월 30일 시행
-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업무 처리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의 제정·시행 필요

2. 심의내용

- 분공개경위 확인 업무 절차(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
- 신변보호조치 업무 절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책임감면 업무 절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업무 절차(안 제26조부터 제41조까지)
- 과태료 부과 절차(안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 보호관련 문서 관리 및 보호상담(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3. 의결결과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

제2011-129호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제10차 전원위원회(2011. 9. 28.)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어 9월 30일 시행
-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공익신고 보상금 업무 처리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의 제정·시행 필요

2. 심의내용

- 보상금 지급 신청 절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보상금 관련 조사 절차 및 보상금 산정(안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 보상금 지급 및 환수(안 제30조부터 제38조까지)
- 보상금 지급 예산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3. 의결결과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

1. 의안개요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3월 29일 제정·공포되어 9월 30일 시행
- 이에 공익신고자등의 공익신고 구조금 업무 처리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한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의 제정·시행 필요

2. 심의내용

- 구조금 지급 신청 절차(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구조금 관련 조사 절차 및 구조금 산정(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구조금 지급 및 환수(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 구조금 지급 예산 및 인적사항 기재 생략(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3. 의결결과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의결

제2011-101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제8차 전원위원회(2011. 8. 22.)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A가 ○○도립대학 ○○학과 학과장으로 납품계약 체결 관련 업무를 하면서 특정업체에게 견적서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후 과다 계약된 금액 상당을 돌려받아 편취한 행위 등은, 직무와 관련된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부패행위임.
- A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해임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임에도,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에 취업함

3. 의결결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A의 해임을 요구하고, A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통보

4. 비 고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검토(분과2011-77호, 2011. 8. 8.)

1. 의안개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등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위면직자인 A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하고자 함

2. 심의내용

- A가 ○○군 부군수로 재직하면서 수해복구 공사 계약 체결 시, 과도하게 특정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예정가격 작성 전에 특정업체를 공사 업체로 선정한 후 당해 업체에 공무상 비밀인 예정가격을 누설한 행위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행위임.
- A는 이러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되었으므로 권익위법 제82조의 비위면직자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받는 대상임에도, 퇴직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공공기관에 취업함

3. 의결결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A의 해임을 요구하고, A를 고발하여야 한다고 통보

4. 비 고

제25차 제1분과위원회 검토(분과2011-120호, 2011. 12. 5.)

제2011-112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제9차 전원위원회(2011. 9. 5.)

신고심사심의관

1. 의안개요

-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의 80% 이상을 구성하는 기성회비 집행과정의 불투명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
- 2008년 위원회에서 ‘국립대학교 기성회계 운영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였으나, 대부분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
- 따라서, 국공립 대학교 기성회비 집행 실태조사를 통해 회계운영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여 예산편성·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심의내용

〈제도개선 방안〉

- 국공립 대학 기성회비 폐지 및 회계 일원화
- (기성회비 폐지 전 조치) 일반직원에게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 전면 폐지
- 교원 연구비 합리적 지급방안 마련
- 등록금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장치 강구
- 감독기관과 대학간 유착구조 근절방안 마련
- 대학별 행동강령 운영 감사기능 강화

〈위법·부당집행 행태 개선〉

- 예산 집행중단 대상 : 법령·기준 위반, 예산낭비 사항
 -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항 : 급여보조성 경비
 - 정부 예산집행지침 위반 사항 : 본연의 소관업무 관련 수당 등
 - 예산낭비 사항 : 일반회계와 중복 집행
- 예산 환수조치 대상 : 예산의 사적사용 분야('09년 이후)
 -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집행, 연구실적 미제출, 교직원 사적영역 지원, 학생생활관 예산 부당집행

3. 의결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문화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국공립대학(54개)의 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

1. 의안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모라토리엄 선언, 공기업의 재정 적자 악화 등으로 인 해 예산낭비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
- 그러나, 업무추진비 위법·부당사용, 연구비 유용, 보조금 횡령 등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법인카드의 위법·부당 사용은 예산낭비는 물론 도덕적 해이를 초래 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심의내용

〈제도개선 방안〉

- 클린카드 의무적 사용금지 업종 확대
 - 골프연습장, 주류판매점, 카테일바 등을 사용금지 업종에 추가
- 업무와 관련 없는 특정물품 구매 제한
- 클린카드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클린카드 집행내역 공개 확대
- 클린카드 집행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위법·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3. 의결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 및 675개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권고하기로 의결

제2장 보고 및 의결

-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전원위원회 보고목록

제1차 전원위원회 2011. 01. 24.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6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건	보호호상과
제2011-10호	제2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1호	제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2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차 전원위원회 2011. 02. 21.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18호	정부발주 도로공사 이중계약 및 기성금 편취 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19호	제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21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22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보호호상과
제3차 전원위원회 2011. 03. 21.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28호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부당수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29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30호	제4차 제1분과위원회 심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31호	제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32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4차 전원위원회 2011. 04. 18.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42호	제3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43호	제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44호	제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45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5차 전원위원회 2011. 05. 16.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51호	○○연구원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보호호상과
제2011-53호	도로공사 시공업체의 토사반입비 허위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54호	AI발생지역 상수관 부설공사 예산 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55호	자치단체 공무원의 추모공원 조성사업 관련 금품 수수 및 횡령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56호	군수의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57호	○○회 전임지도자의 훈련비 편취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58호	제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59호	제9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60호	제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61호	제7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62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63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 추진 사항 보고	보호호상과

제6차 전원위원회 2011. 06. 20.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65호	○○연구원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 요구	보호호상과
제2011-69호	제1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70호	제1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71호	이첩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7차 전원위원회 2011. 07. 18.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79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보호호상과
제2011-87호	제13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88호	제8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89호	제14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90호	제9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91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8차 전원위원회 2011. 08. 22.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100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심사기획과
제2011-101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심사기획과
제2011-102호	제15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03호	제10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8차 전원위원회 2011. 08. 22.		
의인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1-104호	제11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05호	제16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06호	제17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07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9차 전원위원회 2011. 09. 05.		
의인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1-112호	국공립대학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심사기획과
제2011-115호	제18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16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0차 전원위원회 2011. 09. 28.		
의인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1-121호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심사기획과
제2011-125호	제14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26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27호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보호호상과
제2011-128호	공익신고 보호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보호호상과
제2011-129호	공익신고 보상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보호호상과
제2011-130호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보호호상과

제11차 전원위원회 2011. 10. 17.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139호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보호보상과 (공신법운영T/F)
제2011-140호	○○부 지역산업기술개발 국가출연금 편취의 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141호	상수도 급수관 개량공사비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142호	어업 면세유류 부정수급 등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143호	○○포 납품비리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호상과
제2011-144호	제15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45호	제16차 제2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46호	제21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 · 의결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47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2차 전원위원회 2011. 11. 21.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158호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임안	보호보상과
제2011-159호	제22차 제1분과위원회 신고사건 심의의결 사항 보고	부패심사과
제2011-160호	이첩 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제13차 전원위원회 2011. 12. 19.

의인번호	의 안 명	소 관
제2011-175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위반자 제재	심사기획과
제2011-176호	○○열차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의혹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공익보호 지원과

제13차 전원위원회 2011. 12. 19.

의인번호	의안명	소관
제2011-177호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1-178호	국책연구과제사업 관련 국고금 편취 건 관련 포상금 지급(이의신청)	보호보상과
제2011-179호	공사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제3자 이익도모 의혹건 관련 포상지급	보호보상과
제2011-180호	농지 매입자금 사기대출 등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1-181호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변호사비 지원 예산낭비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1-182호	공공기관 실내건축 공사 입찰비리 의혹건 관련 포상금 지급	보호보상과
제2011-183호	불이익조치 금지신청	공익보호 지원과
제2011-184호	1. 열차부품 납품관련 공공기관 예산 편취 등 의혹 2. 해양플랜트 연구개발 관련 정부 지원금 횡령의혹	부패심사과
제2011-185호	○○청 관계자의 업무소홀에 따른 예산낭비 의혹	부패심사과
제2011-186호	1. ○○청 등 공무원의 납품검사 관련 부패의혹 2. ○○보증기금 직원의 기술평가 관련 뇌물수수 의혹	부패심사과
제2011-187호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공무원의 알선수뢰 등 의혹	부패심사과
제2011-188호	○○중앙회 직원, 업무추진비 횡령 등 비리의혹	부패심사과
제2011-189호	국립○○원장의 간접비 등 부당 집행 의혹	행동강령과
제2011-190호	보일러등유 및 등유의 자동차 연료 판매와 사용 의혹	공익심사 정책과
제2011-191호	이첩·송부사건 조사기관 조사결과 보고	부패심사과

부 록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무원 행동강령
4. 공익신고자 보호법
5.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6.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7.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등
8.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시행 2012.2.17.] [법률 제11327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25.>

1.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조정 및 기업으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의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위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

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 · 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 · 알선 · 조정 ·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 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익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

원은 이첩된 때에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 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람을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

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1.7>

⑤ 삭제 <2009.1.7>

⑥ 삭제 <2009.1.7>

⑦ 삭제 <2009.1.7>

⑧ 삭제

부칙 <법률 제8878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위원회 조직의 폐지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관사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각각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위원장과 정무직 상임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의 각 소속공무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사무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패방지법」에 따라 행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의 행위와 위 기관에 대한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위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부패방지법」에 따라 청구된 국민감사청구와 감사원·국회·법원·헌법재판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직원은 이 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승계하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342호, 2009.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02호, 2009.2.3> (공직자윤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9968호, 2010.1.25> (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27호, 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시행 2011.10.17.]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서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② 기피사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④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10.17〉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중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패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1. 행정·교육·문화·복지·노동·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농림·수산·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병무·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발)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및 행정심판 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제74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위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을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부패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패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패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패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

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익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익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익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 권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익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익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 · 성명 ·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와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 ·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 · 진술
4. 그 밖에 확인 ·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와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 · 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수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

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와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 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와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 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 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 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 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 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 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88조(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

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에 다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처리·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17]

제9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37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3호, 2009. 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 〈개정 2009.5.28〉

보상금의 지급기준(제77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령	과태료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가. 1차 위반한 자 나. 2차 위반한 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법 제91조제2항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2. 법 제62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다.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라.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법 제91조제1항 제1호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3. 법 제62조제6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치 및 조치에 응하지 않은 자 가. 1차 위반한 자 나. 2차 위반한 자 다. 3차 이상 위반한 자	법 제91조제1항 제2호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7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는 제외한다)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자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자 다.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자 라.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자 마.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자	법 제91조제1항 제3호	1,000만원 700만원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비고

1. 제1호란 또는 제3호란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일과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제2호란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4호란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위원회는 과태료처분 대상자가 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11.2.3.] [대통령령 제22471호, 2010.11.2. 타법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08.12.31.>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 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3.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적용 범위) 이 영은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5.]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1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별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

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으려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전문개정 2008.12.31.]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개정 2008.12.31.>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영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소속 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

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0조(징계 등)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영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그 기관과 그 소속 기관 중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교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거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에 대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규모·성격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4조(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22471호, 2010.11.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시행 2012.2.17.] [법률 제11327호, 2012.2.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벌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벌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 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 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공익신고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 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7조(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이하 “공직자” 라 한다)는 그 직무를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의 방법)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1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 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을 징계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救濟)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등 또는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각하결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疏明)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위원회는 조사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제2조제6호아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 등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이하 “권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호조치결정 등의 확정) ①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은 확정된다.

③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추정)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5조(협조 등의 요청) ①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이나 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보상금)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불이익초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 제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8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9조(보상금과 구조금의 환수 등) ①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 또는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위원회로부터 제26조제6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을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구조금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1조(과태료) ① 제19조제2항 및 제3항(제2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농산물품질관리법」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식품위생법」
4. 「자연환경보전법」
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6. 「폐기물관리법」
7. 「혈액관리법」
8. 「의료법」
9. 「소비자기본법」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4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2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접수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기관 불이첩 통지를 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신고자가 위원회로부터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58조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4조(신고자 상담) ①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은 심사기획과, 부패심사과 또는 신고자가 상담을 요구한 현지에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의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실시한 직원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이를 종합 관리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별로 소정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신고자에게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록) ①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한 후 이들 문서와 신고서, 그 밖에 신고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제5조제2항의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철끈으로 묶어 관리하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비닐 표지를 붙여 심사기록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경우 신고기록의 쪽수를 문서의 하단에 기재하고 사건기록목록에 그 문서의 표제 및 쪽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 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심사기획과나 부패심사과의 담당직원은 신고사항 처리 등의 각 단계마다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신고서 및 부속서류 순으로 순차 편철한다.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발생하는 날짜순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이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이나 부패심사과장 등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받은 부패심사과장 등은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고,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인계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부패심사과장에게 배정하고 해당 신고기록을 인계한다.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과정에서 법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신분보호·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항을 인계받은 부패심사과장은 이를 전담 처리할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심위원 지정) 부패심사과장은 내부공익신고, 고위공직자 대상 신고 및 그 밖의 부패행위와 관련된 중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사항의 확인) ① 부패심사과장은 법 제59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의 확인은 제5조제2항의 방법에 따르고, 제5조제2항(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 접수시에 이미 신분공개 동의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별지 제12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보호보상과장과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사항 등 위원회 안의 다른 부서와 연관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의 확인은 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하여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에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부패심사과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자·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59조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 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출장 확인) ① 신고자가 출석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패심사과장이나 담당직원은 신고자를 직접 방문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 등이 신고사항과 관련된 진술을 희망하나 특별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4조(신고의 보완)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가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거나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6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는 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의하여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그 신고사항을 이첩하지 아니하고 “중결”로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확인서의 작성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로부터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사항 확인서(이하 “확인서” 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는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청취한 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한 후 신고자와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 확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 확인시 신고된 부패행위 내용을 신고자 이외의 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법 제56조에 따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로부터 추가로 증거서류나 참고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의 종전 기재내용에 이어서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담당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이해관계인 등의 확인서 작성 등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에서 이를 접수하여 제5조제1항의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 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배정 후에 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사항을 배정받은 부패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고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은 위원회에, 그 이외의 신고사항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그 신고사항을 “종결” 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접수사실을 통보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접수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첩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17조(신고사항의 심사) ①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을 마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신고심사의견서, 신고서, 확인서 및 제출된 증거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회 의안 상정을 위한 심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고발”
2.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이첩”
3. 영 제5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는 “불이첩” . 다만, 이 예규의

다른 규정에 따라 “중결” 등으로 처리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이첩할 조사기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때에는 영 제57조제2항이 규정하는 주관 조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3호의 신고심사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관련기관이 해당 신고사항 등을 부패방지 업무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참고자료 통보”의 심사의견을 아울러 제시하여야 한다.

⑤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및 심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결”로 처리할 수 있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중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사항
4. 사인간의 분쟁 해결이나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
5. 감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노동위원회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확정된 의결 등 자체의 당부에 관한 사항
6.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단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7. 그 밖에 법에 따른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중결”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영 제57조제1항이나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이나 중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공기관 송부”로 분류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부동의한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 송부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결과가 통보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 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위원회 상정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 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5조제2항제7호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실태조사기능 수행과정에서 확인된 부패행위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신고사항의 고발)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고발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신고서 및 신고사항 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후에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대검찰청에 접수시키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의 고발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고발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20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이첩을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관련공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1.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첩서
2.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 정본
3.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처리절차 유의사항
4. 신고서, 신고사항 확인서 및 그 밖의 증거서류 등 관련자료

② 부패심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첩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첩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위원회가 신고사항의 참고자료 통보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참고자료 통보임을 명시한 공문에 신고서 및 신고자가 제출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21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조사기관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① 부패심사과장은 고발 · 이첩 · 불이첩, 참고자료 통보, 공공기관 송부, 종결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영 제57조제4항 · 제58조제2항 · 제59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 처리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고자가 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위원회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부패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7조제2항 각 호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며,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심사심의관이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은 그 의결의 내용에 따라 제18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 후의 처리에 관한 의결을 함께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부패심사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고, 그 처리결과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로 처리한다.

제24조(신고사항 반송시 처리)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에서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당해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온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절한 조사기관에 다시 이첩하여야 한다.

제4장 이첩사항 등의 조사결과 처리

제25조(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① 부패심사과장은 이첩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즉시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방

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조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조사결과 내용 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62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나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①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결과와 통보내용에 대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조사기관에 문서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요구로 인하여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재조사 요구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구두로 설명을 요구한 후 그 설명요구의 일시·방법 및 설명요구의 요지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기관으로부터 설명요구에 대한 답변을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받은 때에는 그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신고기록에 첨부하고, 구두로 받은 때에는 그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고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은 심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은 후 부패심사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재조사 필요성 심사)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자의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신청 유무에 관계없이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9조(재조사 요구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법 제60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재조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제27조제1항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조사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위원장의 결정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한다.

③ 위원회가 재조사요구를 의결한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의 공문을 해당 조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결과와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30조(재조사요구대장의 기재) 부패심사과장은 재조사 요구 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조사요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31조(재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및 처리) 재조사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2조(공공기관 송부사항에 대한 조사결과와 통보 접수) ① “공공기관 송부” 처리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패행위가 확인되어 해당 공공기관에서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해 온 경우 부패심사과장은 즉시 조사결과와 요지를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 내용에 보상금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고발사항 수사결과 처리

제33조(수사결과와 통보 접수) 고발한 신고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그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제34조(재정신청 심사 등)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형의대상자의 부패행위개혁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후 재정신청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사건 등에 관하여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고발한 날부터 3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위원회는 재정신청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이나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그러한 취지를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해당 검사 등이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⑤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의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재정신청서 작성) 위원회가 재정신청을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은 별지 제 24호서식의 재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재정신청대장의 기재 등) ①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내용을 별지 제25호서식의 재정신청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사실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재정신청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재정신청의 취소)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재정신청 후의 사정변경으로 재정신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재정신청의 취소를 의결한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은 「형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에 따라 재정신청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이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에는 그 기록이 있는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패심사과장은 재정신청 취소의 서면을 제출한 경우 그 사실을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처리상황의 관리 등

제38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 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이 지난 신고사항의 경우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9조(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조치) ① 부패심사과장은 제17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도개선 담당부서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도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제도개선사항을 통보한 부패심사과의 담당직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 비고란에 제1항에 따른 결정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신고자 신분공개시 조치) 부패심사과장은 영 제69조에 따라 신고자가 조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의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보호보상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비밀누설의 금지) 신고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직원 등은 법 제30조에 따라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신고기록의 보존

제42조(신고기록의 보존) 부패심사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즉시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43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그 밖에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 중 공소제기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이첩 또는 불이첩된 사건 중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5조(이관·보존절차) ① 부패심사과장은 제42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패심사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신고기록물 전체의 총 쪽번호를 매긴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고 보존 신고기록에 대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와 체계적인 보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4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8장 기록의 열람 및 기타 보존사무 처리

제48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신고자, 신고자의 대리인인 변호사·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심사기획과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기록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여 이관전인 경우에는 부패심사과장에게 열람·등사신청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9조(허가여부의 결정) ① 신고심사심의관은 제4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기록열람·등사 불허가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열람·등사의 제한) 신고심사심의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1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신고심사심의관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신고심사심의관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52조(신고기록의 대출·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신고관련 문서 등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은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 등이 유일한 원본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 기록물 반환 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 할 수 있으며, 반환 하는 때에는 그 문서 등의 사본 1부를 원본 대신 보관한다.

제54조(기록물의 폐기) 운영지원과장은 제43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폐기 또는 재분류하여야 한다.

제5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0호 「신고사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0호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행한 부패행위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2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4. 5.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7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3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1. 9. 3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고 등의 접수

제2조(신고 등의 접수) ① 심사기획과에 제출된 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은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가 방문·인터넷·우편·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다만,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따른다.
2.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처리결과 통지를 받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① 심사기획과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한다.

- ②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상담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다음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4조(신고 상담) ① 심사기획과나 행동강령과의 담당직원(이하 “담당조사관”이라 한다)은 사무실이나 신고자가 요구한 장소에서 행동강령 위반여부 및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담당조사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상담처리부에 기재

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접수절차) ①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자가 제출하는 신고서 좌측하단 여백에 신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담당조사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신고자에게 신고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연명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기록) ①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고기록 표지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그 밖에 그 신고사항에 관해 작성되는 서류 등을 함께 편철하여 신고기록으로 관리한다. 다만,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서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추가하여 관리한다.

②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혐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에 신고자와 접수 담당직원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 담당조사관은 신고사항 처리 등의 각 단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기록 표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기록에는 해당 신고사항에 관하여 신고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 및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을 순차적으로 편철한다.

제7조(출장 신고접수) ① 신고자가 신고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담당조사관이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접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받은 담당조사관은 위원회에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등을 심사기획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심사기획과장은 즉시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제8조(신고사항의 인계)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사항 요약서를 작성하여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행동강령과에 배정하고 해당 신고기록을 인계한다.

제9조(주심위원 지정)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 중 주심위원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법무감사담당관에게 주심위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인 경우
2. 피신고자가 3급 이상(또는 상당)의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이상의 공직자인 경우
3. 피신고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4. 금품등의 수수 액수나 부당이득의 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제10조(사건의 재배정) 행동강령과장은 배정받은 신고사건이 부패행위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사기획과장에게 사건의 재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서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취소) ①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신고사건이 배정되기 전에는 심사기획과장이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피신고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때에는 이 예규의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의 보완)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완요구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촉박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상당한 기한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종결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사항의 확인·처리)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의 신분공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여부 변경

확인서를 작성하여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에게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신고사항의 확인·처리는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처리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안에서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명이나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출석 및 진술 요구 등)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영 제10조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이 촉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출장 확인·조사)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자, 피신고자 또는 이해 관계인등이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사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등의 작성) 행동강령과 담당조사관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8조(증거자료 등의 제출)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신고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추가로 증거자료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신고기록 목록에 추가하여야 한다.

제19조(신고처리의견서 작성)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조사를 종료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통보 등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요구
2. 피신고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직자의 경우에는 피신고자의

임면권자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의 요구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1항의 조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법 제59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첩”
2. 법 제59조제4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고발”

제21조(종결 처리의견 제시)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확인·조사 결과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본인 여부 및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위원회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사항
 3. 신고사항이 3회 이상에 걸친 동일내용의 반복신고인 경우
 4. 신고사항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종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행동강령과장은 제9조에 따라 주심위원이 지정된 신고사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심위원에게 보고한 후 종결하여야 한다.

제22조(기관 송부 처리의견 제시) 행동강령과장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고내용이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 송부 처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상정)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1. 주심위원이 지정된 사건 중 제20조의 처리의견을 제시한 경우
2. 그 밖에 신고사항의 내용상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24조(신고사건의 처리)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라 신고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신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사본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송부하고 그 원본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의결서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5조(제출받은 증거물의 처리) ①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의 경우에는 사건조사가 종료된 후 사건처리결과와 함께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송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표 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이하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의 보관확인서와 증거자료의 사본을 작성한 후 사건조사 종료 전에 송부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제출된 증거물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15조가 정하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출자나 원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근거자료를 남기고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 송부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 및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25조를 준용하여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신분공개 부동의시 송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사항 처리 시 신고서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그 처리결과 내용을 신고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신고사항의 고발·이첩) ①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건을 고발 또는 이첩하는 경우에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고발·이첩된 사항의 결과에 대한 처리는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행동강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인용이나 기각 등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이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2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행동강령과장이 제3항에 따라 인용의 의견을 제시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에는 제20조 내지 22조에 의한 처리의견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⑤ 행동강령과장은 위원회가 이의신청 인용의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행동강령과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사항을 신고자 및 심사기획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통보를 받은 심사기획과장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서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종결 할 수 있다.

제30조(처리상황 점검) 신고심사심의관은 신고접수처리부에 의하여 신고사항의 접수,

처리경과, 처리결과, 처리기간 등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1조(적발사건의 처리) 위원회의 행동강령 이행·운영실태 조사 또는 점검과정에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이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이 예규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기록의 보존 등

제32조(신고기록의 보존) 행동강령과장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경우 해당 신고기록을 종결일로부터 1년간 보관한 후 심사기획과에 이관하여 보존하게 한다.

제33조(보존기간) ① 신고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으로 보존한다.

1. 영구 :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사건 관련기록 기타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기록
2. 10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 중 고발 또는 이첩된 사건의 기록
3. 5년 : 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사건의 기록
4. 3년 : 그 밖의 사건의 기록

② 심사기획과장은 신고기록의 보존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기록물의 폐기심사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신고사항의 처리가 종결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5조(이관·보존절차)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2조에 따라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표지를 작성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기록 이관 명세서와 함께 심사기획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고기록을 이관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기록목록을 작성하여 심사기획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이관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기록보존부를 작성하고 보존 신고기록에 대한 색인부를 작성·비치하여 열람의 편의와 체계적인 보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 관련 민원기록)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37조(이의신청 관련 기록) 이의신청 관련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에 합철하여 보존한다.

제5장 신고기록의 열람·등사 등

제38조(기록의 열람·등사 신청) ① 신고자, 신고자의 위임을 받은 자, 피신고자, 이해관계인등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심사기획과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고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고기록의 보존여부를 확인하여 이관 전인 경우에는 행동강령과장에게 열람·등사신청서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9조(허가여부의 결정) ① 행동강령과장은 제38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과장은 신청의 전부나 일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통지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열람·등사의 제한) 행동강령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그 밖의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신고자 또는 신고관계인의 신분노출 및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1조(열람·등사의 방법) ① 기록의 열람·등사는 행동강령과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과장은 보존사무 담당직원을 열람에 참여시켜 기록훼손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행동강령과장이 기록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열람·등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허가된 부분만 발췌하거나 다른 부분은 밀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가되지 아니한 부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열람·등사에 따른 수수료 산정 및 징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정보공개제도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2조(신고기록의 대출·열람) 위원회 안에서 신고기록을 대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록대출표와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존기록대출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고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 및 처리 담당자와 결재권자 이외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건열람기록전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관련 문서의 반환) 위원회에 제출한 신고 관련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문서가 유일한 원본 증거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기록물 반환요청서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존사무 담당직원은 행동강령과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하는 때에는 문서를 사본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기록물의 폐기) 운영지원과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인계받은 신고기록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기록물폐기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폐기나 재분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유효기한) 이 예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7호, 2008.4.17.>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4호 「행동강령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행한 행동강령 신고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3호, 2009.6.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2009.8.24.>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9호, 2011.9.30.>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제출하거나 통지 받은 신청서 등은 이 예규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9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5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09. 11. 2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3조까지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포상금 및 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함으로써 포상 및 보상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포상

제2조(포상추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정부포상 대상) 제2조의 포상을 추천할 수 있는 정부서훈 및 정부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1.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3. 그 밖에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국가의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다수 국민에게 반부패의식을 깊이 심어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정부포상 대상의 위원회 상정)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관이나 위원회의 신고심사심의관 등(이하 “조사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신고심사심의관은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부포상과 관련한 자료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기관등의 추천서 및 의견
2. 그 밖에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의 의견

제5조(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등에서 추천한 포상대상자를 심의·의결하여 행정안전부 등에 추천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상훈법」 등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서훈공적심사위원회 및 공적심의회 의결로 본다.

② 위원회의 정부포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의결이 있는 경우 신고심사심의관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한 후 위원회 상훈담당과장에게 통보한다.

③ 정부포상 대상 개인이나 단체의 추천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천할 수 있다.

제3장 포상금 및 보상금

제6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개인 및 단체 중에서 조사기관등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추천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의 조사·확인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로서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

2.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과정 및 불복구제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금의 결정) ① 영 제7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한도액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포상금 의안상정)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확인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의 추천사유, 조사·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 위원장(이하 “보상위원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신청) 부패행위 신고자는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신고자가 영 제72조제3항에 따라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다만,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비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치료를 하는 경우 그에 상당한 비용으로 한다.

가. 진찰료

나. 일반병실의 입원료, 다만, 진료상 필요로 일반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한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

다.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

라. 의지·의치·안경·보청기·보철구 기타 치료에 부수하여 필요한 기구 등의 비용

마. 호송·전원·퇴원 및 통원에 필요한 비용

바. 환자 식대·간병료

2. 전직, 전·출입, 파견근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 등을 옮기는데 소요된 이사비용.

3.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이나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경우에 소요된 비용. 다만, 변호사·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은 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나 「민사소송등 인지 규칙」을 준용한다.

4. 불이익 처분으로 인한 실직으로부터 원상회복이나 취업 등이 이루어 질 때까지의 임금상당액. 다만, 그 지급금액은 실직 직전의 1년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 임금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하고 그 지급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

5.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이나 소송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이나 배상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13조(보상금 지급신청 기간)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1조에 따라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조사결과, 보상금 지급신청 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과 그 증빙자료 및 신청인이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접수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제출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의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15조(대리인에 의한 신청) ①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과 함께 신고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를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고자와 대리인을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와 위임장 등의 기재내용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임관계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대표자의 선정) ① 영 제73조에 따라 보호보상과장은 2인 이상이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자로 선정된 자가 보상금지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지급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과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대표자 및 연명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를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가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고 보상금을 신청할 경우에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와 각자의 신분증 사본 및 보상금을 수령할 사람명의를 예금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연명 신고자와 대표자를 상대로 보상금지급신청서 등의 기재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정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14조의 보상금지급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2. 위원회로부터 받은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서
3. 그 밖에 보상금결정 및 지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심사심의관에게 보고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보상금의 지급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요구가 명백히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보상금지급신청서의 보완) ①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제출한 보상금지급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청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보상금지급신청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신청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종결처리한다.

② 보상금 지급신청자가 보상금지급신청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본하여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제20조(조사 및 확인)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등 및 부패행위 발생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 여부 및 그 규모
2.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초래한 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의 진행 여부
3. 신고자의 부패행위사건 가담 여부 및 정도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보상금 지급금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하여 출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조사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출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담당직원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보상대상가액) ① 제12조에 따른 부과 및 환수 등의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원의 판결에 따라 몰수 또는 추징된 금액이나 그 물품
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에 의하여 납입된 금액
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환수되는 금액이나 그 물품
4. 계약변경 등에 의하여 절감된 금액이나 그 물품
5. 그 밖에 처분이나 판결 등에 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발생한 금액이나 그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은 부패행위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서에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확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수입 증대분이 신고사항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물 등으로 수입된 물품의 평가는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불특정다수인 간의 매매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는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거래 실례가격
2. 시장거래 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감정평가법인의 복수감정가격의 평균가격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대상가액 산정시 선순위 채권 등이 존재하는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공매낙찰가 중 배당가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제22조(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 보상대상가액의 산정 대상기관은 당초 신고한 부패행위 발생기관으로 한정한다. 다만, 부패행위가 직접 발생한 기관 외에도 다른 기관의 소관업무로써 그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재정수입의 증대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대상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23조(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대상가액 1억원 이하 : 20%
2. 보상대상가액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3. 보상대상가액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4. 보상대상가액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5. 보상대상가액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②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상금의 감액기준) ①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② 제1항에 따른 감액사유별 감액은 30%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며, 감액기준을 중복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 감액비율이 보상금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자가 부패행위를 계획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보상금 지급 제외 공직자) 영 제7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업무분장 규정 등에 따른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업무 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업무 종사자
2. 검찰·경찰 등 수사업무 종사자
3. 공공기관의 감사나 감찰업무 종사자
4.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제26조(보상금의 산정순서 및 경합시 보상금 결정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한 보상대상가액 산정
2.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용
3. 영 제7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적용
4. 영 제78조에 따른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적용
5.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영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원회의 종결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가액의 산정과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③ 제2항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제24조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적용한다.

제4장 보상심의위원회

제27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위원회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포상·보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28조(구성 등) ① 영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보상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9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하 “보상위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간사) ① 보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보호보상과장이 간사가 된다.

- ② 간사는 보상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작성하고, 의결서 원본을 보관하며,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참석위원 및 배석자 명단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31조(보상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보상위원회는 매 분기 말 첫째 월요일이 속하는 주의 수요일 오전에 개최한다. 다만, 보상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을 조정하거나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보상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서면의결) 보상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영 제76조제4항에 따라 보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증언·감정·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4. 보상위원이 되기 전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상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보상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간사는 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피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에게도 사본하여 통보한다.

④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보상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보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상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보상위원은 제31조 제2항에 따른 재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34조(보상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조사 확인한 경우에는 조사 확인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확인사항을 포함한다.

1. 영 제72조에 따른 보상사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대상가액
2. 영 제73조에 따른 대표자 선정 여부
3. 영 제80조에 따른 동일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제20조의 관계기관 등에 대한 조사·확인 사항
5. 제24조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 해당 여부
6. 제2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직자 해당 여부
7.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이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8. 그 밖에 포상금이나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제35조(의견조정) 보상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액에 관한 의견이 세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과반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 중 최다액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제36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영 제76조제3항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포상금 지급대상자, 이해관계인, 그 포상이나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대상자의 선정은 보상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위원회에서 신청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일로부터 7일전까지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위원 등의 수당) ① 영 제25조에 따라 보상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이해관계인 및 관계공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상위원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상위원의 실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5장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제38조(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거나 포상금의 추천 등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9조(위원회 상정 및 의결)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토대로 관련 법령 적용의 타당성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이 보상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에 이를 재심의 하도록 할 수 있다.

제40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 ① 위원회에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을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포상금)지급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포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영 제8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보상금 지급을 의뢰하며, 포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재무관에게 해당 포상금 지급을 의뢰한다.

③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④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사망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 수령권자가 받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41조(보상금의 이중지급 방지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았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기관 등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보상금의 지급시기) ① 보상금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 중 법률관계의 확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제43조(이의신청의 접수) ①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상금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보상금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순서대로 보상금 이의신청 접수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신청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에서 보상금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를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45조(보상금 등의 환수) ① 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지급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3조에 따라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 등이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한다.
-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된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보상위원회에 상정한다.
- ④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환수에 대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기초로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 ⑤ 위원회는 보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환수 여부 등을 결정한다.
- ⑥ 위원회가 환수를 결정할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보상금(포상금)환수결정서 정본을 덧붙여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한다.

제6장 보칙

제46조(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이나 보상금은 그의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는 보상금에 관하여는 지체 없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47조(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 포상이나 보상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포상금 지급추천서나 보상금 지급신청서 : 5년
2. 포상금 지급추천서 관리부나 보상금 지급신청 관리부 : 10년
3. 보상위원회의 포상금이나 보상금지급결정서 등 : 영구보존

제4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21호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업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5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1. 20.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9. 5. 28. 이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별표]

포상금 지급기준(제9조관련)

1.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1) 신분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명 이상인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명 이상인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명 이상인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바.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 기소유예, 기소중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 ※ 비교 : 1.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 금액기준란의 5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2) 금전적 처분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4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3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의 부과가 있는 경우
바. 500만원 이하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가 있는 경우

3)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기여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의 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2개 이상의 법률의 개정에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법률 또는 2개 이상의 법령의 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대통령령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총리령·부령·조례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지침·규정 등의 제·개정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 비교 : 1.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이 함께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1개의 법령이 제·개정된 것으로 본다.

2.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나 지침 등의 형식에 관계없이 제도개선 사항의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방지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7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3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바. 500만원 이하	신고와 관련된 정책·사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금액기준	유 형
가. 1억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7,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관심도가 높고 고질적·구조적·반복적으로 발생되었던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다. 5,000만원 이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등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라. 3,000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신고로 인하여 고질적·구조적·반복적인 비리 등이 밝혀져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지는 등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마. 1,000만원 이하	기타 신고로 인하여 부패방지 시책 도입, 제도·관행의 개선 등이 이루어진 경우

6) 금품수수 자진신고

금액기준	유 형
2억원 이하	신고금액의 20% 범위 내로 하되, 자진신고의 동기·시점, 금품수수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호
 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호
 개정 2009. 7.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호
 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8호
 개정 2011. 4. 21.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의 보호사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신분보장 등

제2조(신분상 불이익 등의 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은 신고자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하거나 협조자가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또는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징계조치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휴직·정직·전직 및 감봉 그 밖의 징벌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불이익이나 임금의 차별지급·집단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무조건상의 차별
4.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나 차별
5.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

전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신분보장조치등의 내용)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대한 시정·취소·보류 조치
2. 파면·해임·해고·정직 및 감봉 등으로 인한 급여손실의 상당액에 대한 보전조치
3. 공직자인 신고자에 대한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
4.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시정조치 또는 인·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5. 그 밖에 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조치

제4조(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2항·제3항,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신고자나 협조자 등이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요구인의 인적사항, 요구 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으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분보장조치등요구인(이하 “요구인”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제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예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보완) ① 신고자나 협조자가 제출한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구인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에 한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신분보장조치등 요구의 취소) ①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

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종결 처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그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반환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인조사를 하기 전에 요구인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취소하였으나, 명백히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이를 조사·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내용을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7조(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조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4조제1항의 신분보장조치등 요구서를 검토한 후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하며, 그 경우에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4. 법 제63조의 불이익 추정에 따른 입증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8조(요구인 등의 출석)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요구 사유 및 장소·시간 등을 출석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출석대상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요구인 및 참고인 등이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출장조사) ① 보호보상과장은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장 조사하게 한다.

② 조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 비밀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사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입할 경우 보호보상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한다.

⑤ 조사담당직원은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출장업무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

으로 보호보상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⑥ 조사담당직원은 출장업무를 마친 때에는 보호보상과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진술서 등의 작성) ① 조사담당직원은 요구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때에는 요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증거서류나 참고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진술서에 기재하여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에 덧붙인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술서를 제출받는 때에는 요구인의 인적사항과 취지, 이유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직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진술서 제출요구나 확인조서 작성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술청취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참고인 등에 대한 진술서나 확인조서 등 작성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진술서 등의 작성확인) 조사담당직원은 제10조에 따른 진술서나 확인조서 등을 제출받았거나 작성한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2조(협의조정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 사건의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인 등과 협의를 거쳐 요구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사하고 있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 사건에 대하여 요구인이 요구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이를 반영하여 처리한다.

제13조(조사결과와 위원회 상정)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에 관하여 조사사항 및 조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사항을 포함한다.

1. 신고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여부
2.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
4. 신고와 관련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제14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조치등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 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보호보상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고,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원상회복, 징계보류, 업무부여, 급여보전조치, 인허가·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신고자 등이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을 위원회에 요청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조사 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책임의 감면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⑦ 보호보상과장은 조사결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처리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이하 “부패 행위 신고등” 이라 한다)와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 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책임이 감면되었거나 요구내용이 충족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5조(결정결과와 통보 등) ①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를 하거나 기각·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신분보장조치등의 불이행 처리) ①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조치등을 요구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등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소속기관등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조치등의 이행을 촉구한다.

제17조(인사에 대한 조치요구 처리) ① 공직자인 신고자가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해당 신고와 관련된 인사에 관한 조치요구는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할 것
2. 인사에 관한 조치는 요구인의 직종과 직급 등을 감안할 것
3. 전출·전입 및 파견근무 등은 기관 간에 이루어지도록 하되, 요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 동일 기관의 다른 부서 및 근무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것
4. 특별한 자격과 기술 등이 요구되는 전직의 경우에는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할 것

② 위원회의 인사에 관한 조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인사에 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인이 우선적으로 인사교류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관련기관의 장에게 인사에 관한 조치 등에 대하여 수시로 협의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인사 조치를 요구하거나 기각·종결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8조(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징계요구) ① 신고자나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징계요구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 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분보장조치등의 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조치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사 불응자 및 조사 불응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②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요구 불이행 사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의견 요지
3. 과태료 부과 금액 등
 - ③ 보호보상과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한다.
 1.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행위, 조치요구 불이행자 및 조치불이행 사실
 2. 고발 등 필요한 조치내용
 3. 조사담당자 및 요구인의 의견 등
 -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3항에 따른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제20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자는 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신고자 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신고관련 증거 및 정보
3. 신변보호조치와 관련된 사실
4. 그 밖에 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신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없다.
 - ③ 신고심사심의관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관련 업무 등을 처리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일용직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한다.

제21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그 업무에 대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 또는 동거인이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② 신고사항의 접수·심사·조사 및 보호보상 업무 등과 관련된 위원회 직원은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지연이나 학연 등으로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상급자에게 직무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2조(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의 접수 등) ① 신고자 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나 보도되었다고 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분공개여부 확인요구서(이하 “확인요구서”라 한다)에 따라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분공개 여부확인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처리과정,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등이 공개 또는 보도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게 그 경위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확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④ 확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 관하여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신분공개여부 등의 조사) ① 제22조제1항의 확인요구서를 검토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신분공개 여부 및 경위 등의 조사 등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신분공개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23조에 따른 조사결과 신분 공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위원회에서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청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요구사항을 해당 징계권자에게 통보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신분공개 등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고발 등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신변보호

제25조(신변보호요구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부패행위 신고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이나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어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신변보호조치요구서(이하 “신변보호요구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고, 접수 순서별로 신변보호조치요구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구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요

구하여 접수한 경우에는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변보호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요구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변보호요구서를 반려하거나 종결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요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해당 요구사항이 부패행위 신고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판결의 확정 및 감사·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신고 내용이 부패행위 신고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신변보호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변보호요구의 요구내용이 명백하게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④ 신변보호요구서의 보완이나 취소의 경우에는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26조(신변보호요구의 처리)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1. 신변보호 대상 및 보호기간
2. 신변보호조치 종류
3. 적절한 보호기관 등

②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 여부 등의 조사 및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신변보호요구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의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도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에게 구두나 유선으로 요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④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이 요구인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소하였거나 신변보호조치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장등으로 하여금 그 사유와 내용을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⑤ 보호보상과장은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등으로부터 신변보호조치 및 해제조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요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긴급보호) ① 요구인 및 신변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보호보상과장은 경찰청장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요구인에게 즉시 통지한다.

1.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귀가할 경우 동행
4. 신변보호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
5.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긴급한 신변보호를 한 경우에는 보호보상과장은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신변보호대상자의 관리) 보호보상과장은 신변보호조치를 실시하였거나 조치 중인 경우에는 요구인과 신변보호대상자의 동의 없이는 신변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사전 신변보호 등의 조치) ① 신고사항의 접수·처리·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및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를 준용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5장 과태료 부과기준 등

제30조(과태료 부과기준)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제1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
 -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1,000만원
 -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700만원
 - 다.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 500만원
 - 라.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 : 300만원
2. 법 제62조제6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가. 1차 위반한 경우 : 300만원

나. 2차 위반한 경우 : 500만원

다.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 1,000만원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62조제7항(법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파면 또는 해고 등 신고자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1,000만원

나. 직위해제, 강등, 승진 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700만원

다.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700만원

라. 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500만원

마. 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미부여 등 근무조건상의 차별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3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시 위반행위 횟수 산정 및 과태료 금액 감경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거나 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항제2호의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제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다. 위반행위가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을 요구한 자의 주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부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와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6.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태료처분대상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호보상과장은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안을 상정하는 때에는 제3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유를 참작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 4. <삭제>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부과 결정 및 통지) ① 보호보상과장은 제31조의 의견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의결서 정본을 덧붙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위원회 명칭과 주소
4. 과태료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5.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각 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② 보호보상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결정이 있는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 성명, 납입금액, 기타 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과태료 징수를 의뢰한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제33조(이의제기의 접수) ①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접수 순서별로 이의제기 접수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한다)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서의 접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34조(이의제기서의 처리) ①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호보상과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로부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보호보상과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과태료부과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에 대한 검토의견서, 과태료부과 의결서 정본 및 과태료부과 고지서 사본 등을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신고자보호 조사문서 편철)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보호 요구 및 조사 관련 문서를 접수하거나 작성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와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문서를 편철·관리한다.

② 과태료 및 이의제기 관련 기록은 제1항의 해당 조사기록에 합철하여 관리한다.

제36조(보호상담 등) ① 보호보상과장은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한 신분보장,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보호 및 과태료처분 등에 관하여 방문, 우편,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하는 때에는 상담자의 신분이나 상담내용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3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제정 2008. 4. 17.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예규 제10호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행한 신고자 보호사무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6. 3.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4호>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7. 10.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48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과태료부과·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9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 등에 관한 운영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영 제91조제1항”을 “영 제91조”로 한다.

부 칙<개정 2009. 8. 24.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28호>

이 예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4. 21.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33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및 제38조 본문 중 “법 제92조제2항”을 “법 제91조제2항”으로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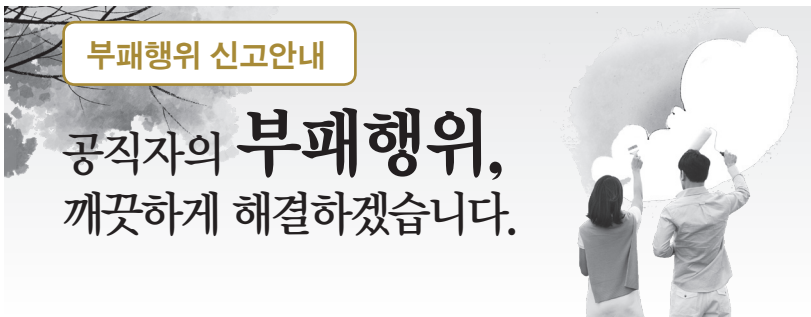
(2011. 12월말)

직위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김영란 (金英蘭)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대법원 대법관 · 대전고법 부장판사	
위원	박재영 (朴在泳)	· 대통령실 행정자치비서관 · 행안부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사무처장)
위원	최현복 (崔現福)	· 대구 흥사단 사무총장 · 반부패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장	부위원장
위원	오준근 (吳峻根)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 법과대학 ·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부위원장
위원	정기창 (鄭基昌)	·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 청렴위 제도개선단장	상임위원
위원	신영기 (辛榮基)	·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실 총무비서관 ·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실 · 규제개혁정책관	상임위원
위원	박성일 (朴成一)	· 행정안전부 감사관 ·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상임위원
위원	황현주 (黃玄周)	· (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위원	송방용 (宋邦鏞)	· (현)여의도포교원 원장 · (현)불교신문 논설위원 · (현)KBS 등 언론인불자회지도법사	
위원	이순창 (李純彰)	· (현)서울 연신교회 담임목사 · (현)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서기)	
위원	김용미 (金用美)	· (현)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현)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위원	문한식 (文韓植)	· (현)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현)행정안전부 법률고문 변호사	
위원	이원일 (李元一)	· 서울고법 부장판사 · (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위원	이희정 (李熙貞)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2012. 1월말)

구분	성명	주요경력	비고
위원장	최현복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곽형석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당연직
위원	김태주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원	황인규	· 변호사	위촉직 (법률전문가)
위원	김금순	· 공인회계사	위촉직 (회계전문가)
위원	장현범	· 감정평가사	위촉직 (감정평가전문가)
위원	김진수	·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위촉직 (비영리민간단체)



부패행위 신고

부패신고 접수와 처리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60일 이내 (30일 이내 연장 가능)에 확인절차를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 드립니다.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시 재정신청(권익위)

부패행위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이행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행동강령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공직자가 공직자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행동강령 위반사항

-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 공용물(관용 차량, 선박 등) / 재산의 사적사용 · 수익
- 직무관련자의 대한 경조사 통지 및 기준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기타 예산의 목적의 사용, 알선 · 청탁, 이권개입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부패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는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의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호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 보상금 지급

부패행위를 위원회에 신고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 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지급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110

공익신고자 보호

당신의 양심에 안심을 더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11.9.30시행)

● ‘공익침해행위’는 어떤것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이곳에 하세요.

- ①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② 소관 행정·감독기관
- ③ 수사기관
- ④ 국민권익위원회
- ⑤ 국회의원
- ⑥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않습니다.

보호조치	신분비밀 보장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조치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 됩니다.

제제 유형		위반 유형
징 계 처 벌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 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보호는 이렇게 해요!

-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 마트,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 이에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였다.
-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인 식품위생법 제94조 「벌칙」에 해당

※ 「식품위생법」 제94조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원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는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사례

건강 분야

AIDS에 감염된 혈액유통
- 혈액관리기관의 잘못된 헌혈관리 및
혈액관리로 에이즈(AIDS)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킨 행위
(혈액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의료법 등 45개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된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기물 수천톤을 농지에 불법매립한 행위(폐기물관리
법 위반)

- 관련법류
자연환경보전법 등
45개



안전 분야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 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하여 자동차 공업사에 납품하는 행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소비자 이익 분야

가짜 참기름 유통

- 중국산 참기름과 식용유를 혼합해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한 행위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 관련법류
소비자기본법 등 24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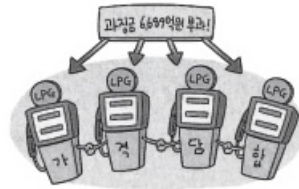


공정 경쟁 분야

LPG 담합

- 정유회사가 6년간 LPG 가격을 담합한 행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 관련법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이용안내

방 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신고센터, 종합민원상담센터)

우 편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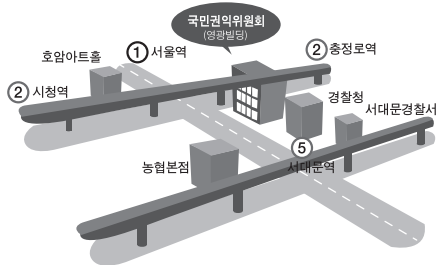
전 화 | 부패행위 신고전화 1398
고충민원·행정심판 상담전화 1588-1517

팩 스 | 부패·공익신고 02)360-3551
고충민원 02)360-2710

인터넷 | 부패·공익신고 www.acrc.go.kr
고충민원 www.epepla.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2011년도 부패 · 공해침해 방지 심의 · 의결례집(제10집)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김 영 란

발행일 : 2012년 4월

인 쇄 : (사) 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Tel. 02) 2683-0955 Fax. 02) 2683-0914

본 부패 · 공해침해 방지 심의 · 의결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심사기획과 ☎ 02)360-6665 Fax 02)360-3550